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김사우**

목 차

I.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1. 일반회계 예산안	1
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
나. 세입예산안	2
다. 세출예산안	3
2.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0
가. 수입·지출계획안 총괄	10
나. 수입계획안	11
다. 지출계획안	13
3. 총수입 및 총지출	17
가. 총수입	17
나. 총지출	18
4. 주요 검토의견	19
가. 일반회계	19
나. 남북협력기금	22
II.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4
1.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24
가. 프로그램 개요	24

나. 세부사업	25
(1) 통일정책추진(1031-300)	25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적정 용역비 편성 필요	26
□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사업 예산대비 적정 조사대상 확보 필요	29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략적 목표 설정 등에 따른 방문국 선정 필요 등	32
□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 삭제에 따른 적정 성과지표 마련 필요	36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39
□ 통일문화행사,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효과성 제고 필요	40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44
□ 국제한반도포럼(GKF),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45
2.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50
가. 프로그램 개요	50
나. 세부사업	51
(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1533-301)	51
□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	52
(2)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58
□ 북한의 공식매체 등의 송출방식 변경에 신속 대응 필요	59
(3)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62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 예산 편성시 주의 필요	63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65
□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안정적 사업추진 필요	66
3.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68
가. 프로그램 개요	68

나. 세부사업	70
(1)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	70
□ 인도적 사안인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71
(2)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74
□ 귀환 남북자의 사회 적응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75
□ 북한주민 사체에 대한 통합적인 추모공간 마련 방안 검토 필요	79
(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82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구분 집행 필요	83
□ 북한인권 국제회의,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 필요	86
□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 등	91
(4)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94
(5)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95
□ 보조단체의 책임성 강화방안 필요	96
□ 보조사업 성격상 '실태조사' 등을 위한 사업 재검토 필요	101
□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점검 등 필요	102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105
가. 프로그램 개요	105
나. 세부사업	107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107
□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시 특수성 고려 필요	108
□ '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 내내역사업의 사업대상 반영 필요	111
5. 남북관계 기반구축(3000 프로그램)	115
가. 프로그램 개요	115

6.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116
가. 프로그램 개요	116
7.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117
가. 프로그램 개요	117
나. 세부사업	119
(1) 통일교육 자료 개발(5031-310)	119
□ 「저작권법」에 근거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반영 필요	120
8.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123
가. 프로그램 개요	123
나. 세부사업	125
(1) 통일업무지원(7032-303)	125
□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원회 신설 지양하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126
(2) 통일업무 정보화(7034-501)	130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ISP구축 사업의 신속한 수행 필요	131
 Ⅲ.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33
1. 수입	133
가. 세부사업	133
(1) 민간출연금(59-594)	133
□ 민간기부금 관리를 위한 지출계획 필요	134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138

가. 프로그램 개요	138
나. 세부사업	139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1033-401)	139
□ 통일체험연수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시설 확충 필요	140
3. 남북사회문화교류(2000 프로그램)	144
4. 인도적 문제 해결(2100 프로그램)	146
가. 프로그램 개요	146
나. 세부사업	147
(1) 구호지원(2141-401)	147
□ 구호지원 사업, 집행 가능성 고려한 증액 필요	148
(2) 민생협력지원(2141-402)	152
□ 민생협력지원, 집행 가능성 고려 필요	153
5. 남북관계 기반구축(3000 프로그램)	158
가. 프로그램 개요	158
6. 남북협력기금 운영비(7100 프로그램)	160
7. 기금간거래(9100 프로그램)	161
8. 여유자금 운용(9700 프로그램)	163

I.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
세 입		1,448	1,507	59	4.1
세 출	합 계	322,027	329,352	7,325	2.3
	일반회계	222,027	229,352	7,325	3.3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00,000	100,000	-	-

(자료: 통일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024년 14억 4,800만원 대비 4.1%인 5,900만원 증액된 15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 3,220억 2,700만원 대비 2.3%인 73억 2,500만원이 증액된 3,293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 일반회계는 2,293억 5,200만원으로 2024년 2,220억 2,700만원 대비 3.3%인 73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의 출연금은 2024년도와 동일한 1,0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관	항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비 고
				(B-A)	%	
소 관 합 계		1,448	1,507	59	4.1	
재산 수입	관유물 대여료	255	256	1	0.4	○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출입사무소 물류센터 및 야드 등 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0	20	-	-	○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 등
	소 계	275	276	1	0.4	
경상 이전 수입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0	10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위반 등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1	1	-	-	○ 위약금(지체상금 등)
	기타경상 이전수입	1,162	1,220	58	5.0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소 계	1,173	1,231	58	4.9	

(자료: 통일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

① 건물임대료,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등 재산수입은 2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과태료,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경상이전수입은 12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다.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
합 계		256,247	322,027	329,352	7,325	2.3
일반회계	계	199,047	222,027	229,352	7,325	3.3
	인 건 비	49,666	54,145	51,699	△2,446	△4.5
	기본경비	9,515	10,008	10,075	67	0.7
	사 업 비	139,867	157,874	167,578	9,704	6.1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57,200	100,000	100,000	-	-

(자료: 통일부)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4년 3,220억 2,700만원 대비 2.3%인 73억 2,500만원 증액된 3,293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는 2,293억 5,200만원으로 2024년 2,220억 2,700만원 대비 3.3%인 73억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4.5%(24억 4,600만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각각 0.7%(6,700만원), 6.1%(97억 400만원) 증액되었음.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2024년도와 동일한 1,00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통일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은 범정부적 ‘건전재정’ 기조 방침에 따라 기존 사업을 일정 부분 감축하면서도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역점사업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종합 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북한인권 개선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2025년 프로그램별 예산안(사업비 기준)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24년 예산 (A)	'25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57,874	167,578	9,704	6.1
☐ 통일정책	14,788	13,574	△1,214	△8.2
☐ 북한정세분석	13,998	19,205	5,207	37.2
☐ 인도적 문제해결	13,167	21,174	8,007	60.8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3,897	80,782	△3,115	△3.7
☐ 남북관계 기반구축	6,449	6,628	179	2.8
☐ 남북회담	305	240	△65	△21.3
☐ 통일교육	15,773	15,639	△134	△0.8
☐ 통일행정지원	9,497	10,336	839	8.8

(자료: 통일부)

사업비의 경우 6.1%가 증액된 가운데 인도적 문제해결 60.8%(80억 700만원), 북한정세분석 37.2%(52억 700만원), 통일행정지원 8.8%(8억 3,900만원), 남북관계 기반구축 2.8%(1억 7,900만원)가 증액되었고,

통일정책은 8.2%(12억 1,4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7%(31억 1,500만원), 남북회담 21.3%(6,500만원), 통일교육 0.8%(1억 3,400만원)가 감액되었음.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정책」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안은 135억 7,4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2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됨. 감액된 주된 이유는 통일정책추진사업 2억 9,300만원,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이 14억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4억 8,200만원 증액 편성됨.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안은 192억 5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52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증액된 주된 이유는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 3억 4,0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사업 9억 800만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41억 900만원 증액 등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안은 211억 7,4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80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증액된 주된 이유는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1억 9,500만원 증액,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66억 4,800만원 증액,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10억 6,400만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1억 400만원 증액 등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안은 807억 8,2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31억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됨. 감액된 주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사업 11억 8,700만원 감액,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23억 4,400만원 감액,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5억 4,200만원 감액 등임.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안은 66억 2,8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됨. 증액된 주된 이유는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사업이 1억 400만원,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사업 1억 1,000만원 증액 등임.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안은 156억 3,9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됨. 감액된 주된 이유는 통일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3,100만원 감액,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7,300만원 감액, 통일교육 자료개발 사업 4억 2,900만원 감액 등임.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세부사업은 총 41개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 세부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가율 (B-A)/A	비고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1533-301)	-	-	340	순증	심층조사 연구용역비 355백만원 사업운영비 5백만원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1533-502)	3,789	1,877	2,785	48.4	분석시스템 관리용역비 2,683백만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1535-310)	5,022	8,828	12,937	46.5	4년차 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보상비 4,611백만원 공사비 7,552백만원 감리비 747백만원 시설부대비 27백만원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311	406	601	48.0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325백만원 · 귀 환 납 북 자 사회적응지원 용역 50백만원 · 납북자·역류자 문제 공감대 확산 202백만원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9백만원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407	5,794	12,442	114.7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1,637백만원 · 북한인권 국제회의 944백만원 ·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강의 제작 170백만원 ·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260백만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10,682백만원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주의 공론화 (2135-306)	-	2,749	3,813	38.7	북한인권증진활동지원 2,960백만원
정책연구개발 (7031-300)	292	271	438	61.6	통일정책추진(1031-300) 정책연구비 통합 438백만원

(자료: 통일부)

또한, 2025년 신규 내역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 및 2024년 종료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 2025년 신규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1533-301)	-	-	340	340	순증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1,281	1,011	892	△119	△11.8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준비	-	-	22	22	순증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 업무 지원(2133-306)	311	406	601	195	48.0
· 북한주민사체 통합추모공간 조성	-	-	10	10	순증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407	5,794	12,442	6,648	114.7
·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강의 제작	-	-	170	170	순증
·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	-	260	260	순증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15,930	15,987	16,945	958	6.0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	-	450	450	순증
·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	-	170	170	순증
· 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	-	-	370	370	순증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1,898	2,521	2,490	△31	△1.2
· 글로벌 통일체험	-	-	250	250	순증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7034-501)	1,914	1,837	1,955	118	6.4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ISP 구축	-	-	131	131	순증

(자료: 통일부)

< 2024년 종료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10,086	18,757	16,413	△2,344	△12.5
· 고용지원금	8	6	-	△6	순감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1,898	2,521	2,490	△31	△1.2
· 공직자 평화통일 역량강화 과정	69	29	-	△29	순감
· DMZ 통일걷기 지원	348	60	-	△60	순감

(자료: 통일부)

2.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가. 수입·지출 계획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계획안(A)	2025년 계획안(B)	증 감	
				(B-A)	(B-A)/A
수입	합계	1,584,114	1,469,156	△114,958	△7.3
	자체수입	43,638	43,872	234	0.5
	정부내부수입	1,456,476	1,311,853	△144,623	△9.9
	여유자금회수	84,000	113,431	29,431	35.0
지출	합계	1,584,114	1,469,156	△114,95	△7.3
	사업비	872,235	823,397	△48,838	△5.6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596,209	548,737	△47,472	△8.0
	여유자금운용	113,431	94,334	△19,097	△16.8
	기금운영비	2,239	2,688	449	20.1

(자료: 통일부)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4,692억원으로 2024년 1조 5,841억원 대비 7.3%인 1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금운영비가 2024년 대비 20.1%(4억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024년 대비 5.6%(488억원) 감액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도래액이 2024년 대비 8.0%(475억원) 감액됨에 따라 수입·지출규모가 2024년 대비 축소되었음.

나.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 감		비 고
				(B-A)	(B-A)/ A	
수입 합계		1,584,114	1,469,156	△114,958	△7.3	
자체 수입	소계	43,638	43,872	234	0.5	
	건물대여료	40	40	-	-	o 미래센터 건물임대료
	민간융자금회수	22,560	22,560	-	-	o 대출원금 회수
	민간이자수입	3,856	3,856	-	-	o 대출이자 수입
	재산이자수입	2,606	2,840	234	9.0	o 여유자금운용 수입
	민간출연금	150	150	-	-	o 민간출연금
	경상이전수입	11,249	11,249	-	-	o 무상지원 환입분 등
	잡수입	3,177	3,177	-	-	o 보험료 수입
정부 내부 수입	소계	1,456,476	1,311,853	△144,623	△9.9	
	일반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	-	o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356,476	1,211,853	△144,623	△10.7	o 경수로원금(차환분), 사업비 부족분
여유 자금 회수	소계	84,000	113,431	29,431	35.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0,186	4,855	△25,331	△83.9	o 통화금융기관 예치 여유자금 회수분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53,814	108,576	54,762	101.8	o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여유자금 회수분

(자료: 통일부)

2025년도 수입계획안 규모는 1조 4,692억원으로 2024년 1조 5,841억원 대비 7.3%인 1,15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자체수입은 439억원으로 2024년 436억원 대비 0.5%인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정부내부수입은 1조 3,119억원으로 2024년 1조 4,565억원 대비 9.9%인 1,44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그 중 일반회계 전입금(정부출연금)은 1,000억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은 1조 2,119억원으로 2024년 1조 3,565억원 대비 10.7%인 1,44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여유자금 회수는 1,134억원으로 2024년 840억원 대비 35.0%인 29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이자수입은 연평잔 및 예상수익률 증가 전망에 따라 2024년 대비 2억 3,400만원 증액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경수로 원금 차환 및 사업비 부족분 감소로 2024년 대비 1,446억 2,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여유자금 회수의 경우 2025년도 여유자금 이월액 증가 예상 등에 따라 2024년 대비 29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다.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지 출 합 계		662,924	1,584,114	1,469,156	△114,958	△7.3
일반 지출	소 계	24,690	874,474	826,085	△48,389	△5.5
	사업비	22,434	872,235	823,397	△48,838	△5.6
	기금운영비	2,256	2,239	2,688	449	20.1
내부 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상환	474,873	596,209	548,737	△47,472	△8.0
보전 지출	여유자금운용	163,361	113,431	94,334	△19,097	△16.8

(자료: 통일부)

2025년도 지출계획안 규모는 1조 4,692억원으로 2024년 1조 5,841억원 대비 7.3%인 1,15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통일부는 앞서 언급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통일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삭감(5.6%, 488억원)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호 지원 및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일반지출은 8,261억원으로 2024년 8,745억원 대비 5.5%인 48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사업비는 8,234억원으로 2024년 8,722억원 대비 5.

6%인 48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금운영비는 26억 8,800만원으로 2024년 22억 3,900만원 대비 20.1%인 4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상환은 5,487억원으로 2024년 5,962억원 대비 8.0%인 47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여유자금운용은 943억원으로 2024년 1,134억원 대비 16.8%인 19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프로그램별 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통일정책(한반도통일미래센터)」은 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간 청소년 교류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024년 대비 4억 5,100만원이 증액된 5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 왕래와 학술·종교·문화·예술·체육·문화유산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024년 대비 55억 8,300만원 감액된 10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인도적 문제해결」은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이 2024년 178억 7,700만원 대비 44억 6,900만원 감액된 134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구호지원 사업은 2024년 963억 700만원 대비 159억 2,300만원 증액된 1,12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건의료 분야 및 농축산·산림·환경 분야 협력 등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2024년 4,753억 1,400만원 대비 5억 7,100만원 증액된 4,758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남북관계 기반구축」은 남북간 호혜적 경제교류협력을 지원하고 교류협력 기반(SOC)을 구축하며, 개성공단 관리·운영, 기반시설·지원시설 조성 및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경협기반(무상)사업 및 경협기반(유자)사업의 대폭 감액 등에 따라 2024년 2,621억 9,400

만원에서 557억 3,100만원 감액된 2,06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프로그램별 계획안(사업비 기준)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 (B)	증 감	
			(B-A)	(B-A)/A
합 계	872,235	823,397	△488	△5.6
☐ 통일정책	4,592	5,043	451	9.8
☐ 남북사회문화교류	15,951	10,368	△5,583	△35.0
☐ 인도적문제해결	589,498	601,523	12,025	2.0
☐ 남북관계 기반구축	262,194	206,463	△55,731	△21.3

(자료: 통일부)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계획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사 업 비 합 계	22,434	872,235	823,397	△48,838	△5.6
통일기반조성	3,357	4,592	5,043	451	9.8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357	4,592	5,043	451	9.8
남북사회문화교류	3,457	15,951	10,368	△5,583	△35.0
- 사회문화교류지원	3,457	15,951	10,368	△5,583	△35.0
이산가족교류지원	993	17,877	13,408	△4,469	△25.0
- 이산가족교류지원	993	17,877	13,408	△4,469	△25.0
대북인도적지원	752	571,621	588,115	16,494	2.9
- 구호지원	-	96,307	112,230	15,923	16.5
- 민생협력지원	752	475,314	475,885	571	0.1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6,736	248,721	201,499	△46,922	△18.9
- 경제교류협력보험	-	3,847	2,501	△1,346	△35.0
- 경험기반(무상)	3,907	127,152	102,649	△24,503	△19.3
- 경험기반(유자)	-	99,014	84,359	△14,655	△14.8
- 경제교류협력대출(유자)	-	9,000	5,850	△3,150	△35.0
- DMZ 평화적 이용	2,828	9,408	6,140	△3,268	△34.7
개성공단 조성	7,140	13,773	4,964	△8,809	△64.0
- 개성공단 운영대출(유자)	2,027	6,626	2,819	△3,807	△57.5
- 개성공단 기반조성	5,113	7,147	2,145	△5,002	△70.0

(자료: 통일부)

3. 총수입 및 총지출

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안(B)	증감	
				B-A	%
합계	15,116	45,086	45,379	293	0.6
일반회계 (세입)	1,937	1,448	1,507	59	4.1
남북협력기금 (수입)	13,179	43,638	43,872	234	0.5

(자료: 통일부)

2025년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안)은 2024년 450억 8,600만원 대비 0.6%인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453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 남북협력기금 자체수입 규모가 2024년 436억 3,800만원 대비 0.5%인 2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총수입 계획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나.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안(B)	증감	
				B-A	%
합계	223,737	1,096,501	1,055,437	△41,064	△3.7
일반회계 (세출)	199,047	222,027	229,352	7,325	3.3
남북협력기금 (지출)	24,690	874,474	826,085	△48,389	△5.5

(자료: 통일부)

2025년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총지출(안)은 2024년 1조 965억 100만원 대비 3.7%인 410억 6,400,000만원이 감액된 1조 554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규모가 2024년 2,220억 2,700만원 대비 3.3%인 73억 2,500만원이 증액된 2,293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안이 2024년 8,744억 7,400만원 대비 5.5%인 483억 8,900만원이 감액된 8,260억 8,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된 감액 사유임.

4. 주요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1)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7억 600만원) 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 관련, 정책연구비를 당초 편성된 예산(3,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어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사업에 필요한 적정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미리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내내역사업은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와 관련하여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항 설계 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편성하지 아니하는 등 정밀한 추계를 하지 못하였는바,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억 5,000만원)과 관련, 국외여비로 편성된 2억 9,200만원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볼 때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출장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전략적 목표에 따른 국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통일문화진흥’(12억 9,600만원)과 관련하여, 2025년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국민 참여형’ 통일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먼저 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년 대비 일반용역비가 대폭 증액된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국제회의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19억 3,300만원)와 관련하여, 2015년 ‘광복 70주년’에서 진행된 한반도국제포럼(KGF)과 세계평화회의를 통합하여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국제한반도포럼(GKF)을 추진할 계획이나, 현 시점에서는 초청되는 세계적 저명인사 등을 가늠하기 어려워 적정 사례비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3억 4,000만원)와 관련하여, 탈북민을 대상으로 1:1 설문조사, 심층 면접을 통해 북한의 경제, 사회, 주민의식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사 사업들간에 부서간 협의를 통해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조사대상을 선정 및 조사대상 수 감소에 따른 심층 분석 등 경제·사회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정보상황실 운영’(9억 2,800만원)과 관련하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공식매체 및 선전매체의 방송 송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등 시설 설치 및 회선 사용료로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통일부는 이에 안정적인 영상 확보 방안 및 송출방식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내역사업 중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내내역사업(1억 7,000만원)과 관련하여, 탈북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참가를 통해, 영어습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통일미래 한국을 준비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탈북청소년의 경우 탈북시점에 따라 일부 정규화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국내에 입국 후에도 별도의 외국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8)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내역사업 중 ‘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 내내역사업(3억7,000만원)과 관련하여, 노후건물 지하층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 ‘한꿈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통일부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라도 일정 인원 이상의 탈북청소년이 교육받고 있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이전 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 유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9)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1억원)와 관련하여, 2023년에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기념행사와 관련된 적정 소요액을 반영함으로써 기념식 외에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기념일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0)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3억 2,500만원)과 관련하여, 생존 귀환납북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한 건강 질환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는 사

회적 고립감,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현재 지원을 위한 용역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음. 2025년에 수의계약이 불가한 5천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계약법령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남북협력기금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50억 4,300만원)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최신 기술 활용, 통일체험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및 장비 개선을 위해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편사업에 10억 5,2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2025년도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편을 진행함에 있어 최근 리모델링 및 콘텐츠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전시 및 체험시설들을 살펴보고, 최신 기술 활용을 통한 콘텐츠 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과학관, 항공우주과학관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전시물, 체험시설 등의 대여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북한 영유아 등 지원’(1,471억 3,300만원)과 관련하여,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5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예산액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및 남북 관계의 악화 등을 고려할때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증액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구호지원’(159억 2,300만원)과 관련하여, 북한지역에 자연재해,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경감 및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예산액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및 남북 관계의 악화 등을 고려할때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증액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Ⅱ.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C=B-A)	%
[1000] 통일정책			15,538	14,788	13,574	△1,214	△8.2
	[1031] 평화통일기반조성		15,538	14,788	13,574	△1,214	△8.2
		[300] 통일정책추진	3,090	2,049	1,756	△293	△14.3
		[301] 국내통일기반조성	9,726	10,144	8,741	△1,403	△13.8
		[302] 국제통일기반조성	2,721	2,595	3,077	482	18.6

자료: 통일부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 통일정책 및 비전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7억 8,800만원 대비 8.2%인 12억 1,400만원이 감액된 135억 7,4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정책추진에서 2억 9,300만원, 국내통일기반조성에서 14억 300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에서 4억 8,200만원 증액되었음.

나. 세부사업

(1) 통일정책추진(1031-300)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정책추진(1031-300)	3,090	2,049	1,756	△293	△14.3
－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705	999	706	△293	△29.3
－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운영	1,277	－	－	－	－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08	1,050	1,050	△300	△20.0

자료: 통일부

‘통일정책추진’(1031-300)은 다양한 차원의 한반도 상황과 안보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일 이후 통합까지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제도·법제 등 마련하는 사업이며,

또한 「담대한 구상」 등 통일 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통일미래 관련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20억 4,900만원 대비 14.3%인 2억 9,300만원이 감액된 1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에서 남북 통일·통합 정책·법제 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용역이 정책연구개발사업과 통합되어 2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음.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적정 용역비 편성 필요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내역사업 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내내역사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업무협의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함.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 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000	○ 일반수용비(210-01) : 11,000 가.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8,000) •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자문사례비, 원고료) : 5명x200x7회 = 7,000 •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자료발간 및 회의준비) : 1회x1,000 = 1,000 나. 평화 공감대 확산 (3,000)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감대 확산(기술사례비) : 5명x200x2회 = 2백만원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감대 확산(조달수수료 등) : 2회x500 = 1,000 ○ 임차료(210-07) : 2,000 가.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2,000) •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임차료) : 2회x1,000 = 2,000 ○ 일반용역비(210-14) : 35,000 가. 평화 공감대 확산 (35,000)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감대 확산(위탁운영비) = 1식x35,000 ○ 사업추진비(240-01) : 2,000 가.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2,000) •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간담회비) : 1식x200x10회 = 2,000 ○ 정책연구비(260-02) : 30,000 가. 북핵·평화체제 조성 관련 연구용역 (30,000)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정책연구용역 : 1식x30,000 = 30,000	80,000	○ 일반수용비(210-01) : 11,000 가.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8,000) •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자문사례비, 원고료) : 5명x200x7회 = 7,000 •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자료발간 및 회의준비) : 1회x1,000 = 1,000 나. 평화 공감대 확산 (3,000)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감대 확산(기술사례비) : 5명x200x2회 = 2백만원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감대 확산(조달수수료 등) : 2회x500 = 1,000 ○ 임차료(210-07) : 2,000 가.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2,000) •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임차료) : 2회x1,000 = 2,000 ○ 일반용역비(210-14) : 35,000 가. 평화 공감대 확산 (35,000)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감대 확산(위탁운영비) = 1식x35,000 ○ 사업추진비(240-01) : 2,000 가.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2,000) •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간담회비) : 1식x200x10회 = 2,000 ○ 정책연구비(260-02) : 30,000 가. 북핵·평화체제 조성 관련 연구용역 (30,000)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정책연구용역 : 1식x30,000 = 30,000

자료: 통일부

그 중 정책연구비(260-02)와 관련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정책연구용역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까지 통일정책추진(1031-300)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정책연구비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에 3,000만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에 1억 5,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을 제외하고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정책연구개발(7031-300)에 통합되었음.¹⁾

< ‘통일정책추진’세부사업 정책연구비(260-02)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결산	2024		2025년도 예산안	증감 (증감을)
		예산	집행액		
통일정책추진(1031-300)	3,090	2,049	899	1,756	△293
(정책연구비, 260-02)	846	439	75	180	(△14.3)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720	999	525	706	△293 (△29.3)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260-02)	140	30	50	30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 성 및 운영	1,108	1,050	374	1,050	-(-)
정책연구용역, 과제 위촉(260-02)	424	150	21	150	-

자료: 통일부(집행액은 10.18. 현재 기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 내내역사업의 정책연구비 현황을 보면, 매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오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분은 동일 세부사업(통일정책추진) 내내역사업(‘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회계년도 결산 지적사항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중복집행을 지양하고, ‘통일정책추진(1031-300)’ 내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개발(R&D, 7031-300)’로 단일화하여 추진할 것”을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통일정책추진(1031-300)’ 내 연구용역비를 감액하고 동 사업에 167백만원 증액편성함.

특히, 2023년에는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 사업 정책연구비 현황 >

(단위: 건, 천원)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성과		
		정책연구	예산액	실집행
2017	북핵·평화구축 정책 수립	-	-	-
2018	북핵·평화구축 정책 수립	1	20,000	14,391
2019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1	20,000	19,417
2020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4	50,000	77,000
2021	북핵·평화구축 정책 수립	1	35,000	35,000
2022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2	45,000	44,984
2023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3	30,000	139,971
2024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2	30,000	50,000
202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	-	30,000	-

주: 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가 최근 들어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2025년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를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바,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미리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히 추진할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개발(7031-300)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임.

□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사업 예산대비 적정 조사대상 확보 필요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내역사업 중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내내역사업은 통일외교의 추진 및 보완 방향 마련 및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세계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00	○ 일반연구비(260-01) : 300,000 가.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300백만원) · 조사 수행 : 1식x300백만원 = 300백만원	30,000	○ 일반연구비(260-01) : 300,000 가.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300백만원) · 조사 수행 : 1식x300백만원 = 300백만원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를 통해 해외 일반국민들의 북한·통일인식을 청취하여 통일외교정책에 반영하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사업추진의 배경으로 들고 있으며, 2024년도에 통일인식조사사업을 28개국을 조사지역으로 하여 최소 2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음.

실제로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우선 남북한과 관련성이 높은 국가로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2024년도에 8개국 9,000명(미국 2000명, 일본·독일·영국·프랑스·베트남·호주·폴란드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통일인식조사사업 실시 현황 >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획 수립												
조달공고 및 계약												
문항설계 및 번역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데이터 검증 및 통계 자료화												
응답결과 분석 및 평가												
최종 보고회												

자료: 통일부

즉, 통일부는 당초 '국제인식 통일인식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부처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해외 한류 실태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참고하여 사업을 설계하였고, 2024년 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조사지역 28개국, 조사대상 최소 2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하여 예산을 승인 받았음에도, 실 집행은 8개 조사지역에 최소 9,000명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데 그쳤음.

특히, 2024년 예산은 통일인식 조사 비용만을 편성하였음에도 추진 과정에서 문항 설계와 검수 및 번역시 통일·외교 분야 및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수반되었고, 이로 인해 2,5000명이 아닌 9,000명을 조사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임.²⁾

2) 통일부는 추진 과정에서 문항 설계와 검수 및 번역시 통일·외교 분야 및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과업도 포함되어 진행될 예정인 바, 향후 조사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참고사례 >

	통일부 신규사업 설계	통일부 실천사업 (2024년)	타부처 사례(202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조사 명칭	(가칭)한반도 통일인식 조사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해외 한류실태조사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표본 규모	최소 25,000명	9,000명	25,000명	10,000명
조사 지역	28개국(G7 및 APEC 21개국)	8개국	26개국	16개국 18개 도시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온라인 패널 조사	온라인 패널 조사	온라인 패널 조사
조사 문항	약 30개 문항 내외	30문항	120개 문항	65개 문항
소요 예산	3.5억 원	3억원	3.4억 원	1.4억 원

자료: 통일부

통일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지만, 한반도 통일문제는 단순히 남북한의 재결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해외국가의 통일인식을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통해 통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와 관련하여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문항 설계 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편성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타부처 조사사업에 비하여 조사대상 수 대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2025년도에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예산 대비 적정 조사대상 국가 및 표본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략적 목표 설정 등에 따른 방문국 선정 필요 등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역사업은 현 정부의 통일 미래전략을 구상·수립하고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부장관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국외여비(220-02) 2억 9,200만원을 편성함.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국외여비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결산		2024		2025안	증감 (증감을)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1,500	1,099	1,050	609	1,050	-
(국외업무여비)	(292)	(134)	(292)	(68)	(292)	-

자료: 통일부(집행액은 10.18. 현재 기준)

제1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3년에 현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통일 정책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확보를 위해 미국, 독일, 베트남을 각각 방문하였음.

즉, 국제사회 공감대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대화 사업으로 미주지역 국제협력대화(국무부·UN평화구축국 관계자 면담, 언론사 방문, 전문가 및 교민 간담회 등), 통일준비 사례조사를 위한 독일 국제협력대화(12.11.~12.16.), 베트남 국제협력대화(12.14.~12.16.)를 각각 실시하였음.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3년의 경우 예산 15억원 중 10억 9,900만원을 집행(73.3%)하고 4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4년 10월 현재 기준 10억 5,000만원 중 6억 900만원을 집행(58.0%)하고 있으며,

국외여비(220-02)의 경우, 2023년에 2억 9,2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을 집행(45.9%)하고 1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4년 10월말 현재 6,8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치고 있음.

< 2023년 국외출장 내역 >

(단위: 백만원)

출장지	출장자	방문기관	집행 내역
미국 (6.5.~6.11. 5박 7일)	위원 5명, 수행 2명 (김○호 통일미래기획위원장, 남○옥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 국제협력 분과위원장, 고○환 위원, 주○우 위원 / 통일부 과장 1명, 사무관 1명)	△미 국무부 △미국 의회조사국 △UN 정무평화구축국 △CSIS △해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HRNK △스팀슨센터 등	8,000만원
			항공료 58, 철도운임 2, 숙박비 15.3, 일비·식비·여행 자보험 등 4.7
독일 (12.11.~12. 15. 4박 6일)	위원 3명, 수행 5명 (원○천 인권인도 분과위원장, 김○정 위원, 이○별 위원 / 통일부 과장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연방 독재청산재단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 △SWP(국제안보연구소) △연방총리실(동독특임관실) △연방 검찰청 △연방의회(사회주의독재희생자특임관) △동독 정치범수용소 △동독 군가보안부 문서고 △DDR박물관, 장벽박물관 등	3,450만원
			항공료 25.4, 숙박비 5.7, 일비·식비·여행 자보험 등 3.4
베트남 (12.14.~12. 16. 2박 3일)	위원 5명, 수행 3명 (이○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 김○천 국제협력 분과위원장, 김○옥 정치군사 분과위원, 박○휘 위원, 주○우 위원 / 통일부 장관특별보좌역,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전략연구·국제관계 발전센터(CSSD) △베트남 사회과학원(VASS) △국립외교아카데미(DAV)	1,670만원
			항공료 12.3 숙박비 2.8, 일비·식비·여행 자보험 등 1.5

자료: 통일부

2024년 3월 출범한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다양한 국가에서 국제협력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10월 현재까지 ‘8.15 통일 독트린’ 관련 국제학술회의인 북한대학원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국제 세미나 외빈 초청에 2,360만원, 캠프데이비드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2,670만원을 집행하고, 헝가리 출장(9.30.~10.4., 3박 5일, 출장자: 위원장, 위원 1인 및 수행원 1인)에 1,320만원 등 총 6,800만원만을 집행하였음.

통일부는 2024년 내에 독일·스위스 등(10월말), 영국·벨기에(11월), 일본(11월), 오세아니아(11월), 동남아시아 지역(12월), 미국 워싱턴 D.C. 및 샌프란시스코(12월) 등을 방문할 예정이고, 각 출장지역에 5~6인 규모의 출장단(통일미래기획위원 2~3인, 통일부 직원 2~3인)을 구성하여 편성된 국외여비(220-02) 전액을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제2기 위원회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2023년 제1기 위원회의 국외여비 집행률이 45.9%(1억 3,400만원)이고, 미국을 제외한 두 국가(독일, 베트남)에는 12월에 출장을 추진한 점, 독일 출장의 경우 위원 수(3인)보다 많은 통일부 직원(5인)이 수행한 점,³⁾ 무엇보다 2024년이 두 달도 남지않은 현 시점⁴⁾까지 2024년에 편성된 국외여비의 23.3%(6,800만원)만을 집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잔여 국외여비(2억 2,400만원)를 모두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⁵⁾

3) 통일부는 2023년 독일 출장의 경우, 통일준비 차원(△연방독재청산재단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 △SWP(국제안보연구소) △홀름트대학교 동독출신 학자 △연방총리실(동독특임관실) △前 내독관계성 과장 등 면담)와 북한인권 차원(△연방검찰청 △연방의회(사회주의독재희생자특임관) △동독정치범수용소 △동독국가보안부 문서고 △前 주북대사 △기록보존소 전문 변호사 △구 동독 박물관, 베를린 장벽 박물관 등을 방문)의 2개 팀으로 나누어 출장을 수행하였고, 각 팀의 통일부 직원은 단순 수행이 아니라 관련 정책 사례조사를 위해 참석하였다고 설명함.

4) 학계 인사가 많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상, 방학시기인 12월 중순 이후에 출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 국가의 문화 등에 비추어 당초 목표로 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5) 그러나 통일부는, 2024년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 통일 독트린의 국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러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협력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현재 6개 지역에 대한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잔여 국외여비에 대한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제협력대화는 특히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요국에 한정하여 전략적 목표를 세워 필요한 국가를 선정하고 다른 사업들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⁶⁾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외여비 2억 9,200만원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2024년 10월 말까지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출장 대상국을 축소하는 등 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출장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전략적 목표에 따른 대상국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2024년도 출장 대상국가로 헝가리, 벨기에 등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통일부는 헝가리는 체제전환국이고, 북방외교의 첫 성과국으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고, 벨기에는 EU 본부가 설치된 곳으로 EU와의 협력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입장임.

□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 삭제에 따른 적정 성과지표 마련 필요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책 이해와 공감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인 바, 통일부는 금년도까지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동 성과지표를 삭제하고 있음.

종래 ‘통일·대북정책 고객만족도’는 통일정책의 고객인 일반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후 결과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하고, 이를 통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일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목표 Ⅱ-1(통일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동 성과지표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음.

< 2021~2025년도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 실적 >

성 과 지 표	구 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74.5	75.5	75	75 ^{주)}	-	-	정책고객 만족도	전 화 · 이 메 일 · 서 면 설 문
	실적	77.3	70.1	62	-	-			
	달성도	103.8	92.8	82.7	-	-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참여자 수 (단위: 명)	목표	-	-	-	-	22,890	△'24년도 통일문화행사 개최 목표 3회 중 개최 완료(1회)한 실적치(2,000명) 기준 △'23년 통일체험연수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16,890명)	통일공감대 형성 관련 행사 참여자수 집계 (통일문화행사, 통일체험연수)	자체 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주: 2024년 목표치는 과거 3년('21년~'23년) 실적 평균치 등을 감안하여 75점으로 설정

자료: 통일부

성과관리 결과 2021년에는 77.3점(103.8%)으로 당초 목표치 74.5점을 초과달성한 반면, 2022년에 70.1점(92.8%), 2023년에 62점(82.7%)으로 각각 목표치 75.5점과 75점에 크게 미달하였음.

통일부는 <2024년도 성과계획서>⁷⁾에서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4년 고객만족도 목표치를 최근 3년('21-'23년) 실적의 평균치(69.8점)을 고려하면서도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그리고 남북관계가 상승·하강 국면을 반복하고 있어 향후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치를 75점으로 상향 설정하였다는 설명을 하였음.

2024년도의 목표(75점) 달성 여부는 2024년 말에 '통일·대북정책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할 예정이지만, 2025년도부터는 지난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통일정책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를 삭제하는 대신 통일문화행사 및 통일체험연수 등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한 인원 수'로 그 성과지표를 변경할 계획인 바, 단순히 참여인원 수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성과관리제도⁸⁾ 본연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7) 자료: 통일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p. 75

8)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의 최종성과를 관리할 수 있게 하여줌. 성과지표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함으로써 그 달성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2024년도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 측정방법 >

구분	정책고객 만족도
측정대상기간	2024. 1. 1. ~ 12. 31
실적치집계 완료 시점	2025년 1월말
측정 수행 기관	외부 전문기관 위탁
조사대상	통일 정책고객 (일반국민 및 외국인 포함)
조사항목	대북정책, 통일준비 노력, 통일공감대 제고 노력 등
조사방법	전화·모바일·이메일 병행
평정부여방식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설문문항	1) (대북·통일정책 수립)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핵문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①매우 잘하고 있다 ②대체로 잘하고 있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못하고 있다 ⑤매우 못하고 있다 2) (국내외 통일공감대 형성) 통일국민협약 추진 및 대국민 소통 등을 통한 정부의 통일공감대 제고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①매우 잘하고 있다 ②대체로 잘하고 있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못하고 있다 ⑤매우 못하고 있다 ※ 해당년도 대북·통일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일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국내통일기반조성 (1031-301)	9,726	10,144	8,741	△1,403	△13.8
- 통일정책 대국민소통 활성화	2,520	2,639	2,740	101	3.8
- 통일+센터 설치 운영	5,138	4,885	2,980	△1,905	△39.0
-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919	-	-	-	-
- 통일문화진흥	1,069	894	1,296	402	45.0
-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	500	500	-	-
-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80	1,226	1,226	-	-

자료: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통일정책 홍보 및 국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통일관련 서비스 종합지원 및 민간-정부 간 소통·협력 거점 마련,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및 통일문화행사 등을 통해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과 공감대를 강화함과 아울러,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 및 국제사회의 북한 및 통일인식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01억 4,400만원에서 14억 300만원 감액된 87억 4,1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센터 설치 운영에서 19억 500만원 감액되었고,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서 1억 100만원, 통일문화진흥에서 4억 200만원 각각 증액되었음.

□ 통일문화행사,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효과성 제고 필요

내역사업 '통일문화진흥'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체험 행사, 대중문화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통일문화행사 운영'에 10억 3,300만원,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에 2억 6,300만원 등 총 12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통일문화진흥 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94,368	○ 상용임금(110-03) : 30,221 가. 통일문화행사 지원인력 보수(1명) : 기본급 24,778천원 + 시간외수당 2,663천원 + 명절상여금 1,100천원 + 급식비 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7,400 가. 통일문화행사 운영 : 34,400 · 조달수수료 9,000천원 + 기술평가 사례비 2,400천원 + 전문가 의견수렴 3,000천원 + 자료제작 20,000천원 나. 통일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사업 조달수수료 및 사례비 : 3,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 가. 통일문화행사 지원인력 1명 x 500,000원 ○ 일반용역비(210-14) : 789,934 가. 통일문화행사 운영 위탁 : 530,000 나. 통일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사업 공모전 위탁 : 260,000 ○ 국내여비(220-01) : 2,800 가. 통일문화행사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20,000원x5명x28회	1,235,765	○ 상용임금(110-03) : 31,171 가. 통일문화행사 지원인력 보수(1명) : 기본급 25,571천원 + 시간외수당 2,820천원 + 명절상여금 1,100천원 + 급식비 1,6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7,400 가. 통일문화행사 운영 : 34,400 · 조달수수료 5,400천원 + 기술평가 사례비 6,000천원 + 전문가 의견수렴 3,000천원 + 자료제작 20,000천원 나. 통일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사업 조달수수료 및 사례비 : 3,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 가. 통일문화행사 지원인력 1명 x 500,000원 ○ 일반용역비(210-14) : 1,190,000 가. 통일문화행사 운영 위탁 : 930,000 나. 통일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사업 공모전 위탁 : 260,000 ○ 국내여비(220-01) : 2,800 가. 통일문화행사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20,000원x5명x28회

○ 사업추진비(240-01) : 7,800 가. 통일문화행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30,000원x10명x26회 ○ 일반연구비(260-01) : 20,000 가. 통일문화행사 평가용역 : 20,000천원 x 1식 ○ 고용부담금(320-09) : 5,713 가. 통일문화행사 지원인력: 국민연금 3,290천원+ 퇴직금 2,45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800 가. 통일문화행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30,000원x10명x26회 ○ 일반연구비(260-01) : 20,000 가. 통일문화행사 평가용역 : 20,000천원 x 1식 ○ 고용부담금(320-09) : 6,105 가. 통일문화행사 지원인력: 국민연금 3,507천원+ 퇴직금 2,598천원
--	--

자료: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2024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 52.9%를 나타낸 바,⁹⁾

통일부는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광복 80년’을 맞아, 현 정부가 구상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대내적인 통일의지의 결집을 위한 국민통합의 계기로 하면서 통일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임.

2024년의 경우,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통일문화행사를 추진하고 대국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시·공연·체험 콘텐츠로 구성하여 총 3회를 실시하였고,¹⁰⁾

통일문화콘텐츠 공모전으로 「2024년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2024 통일로가요 플러스)」, 조달 공고(7.5.~7.22.), 기술협상 및 계약(8.8.), 공모작 접수(9.3.~10.3.), 1차 동영상 예심(10.4.~6.), 실연평가(10.10.), 결선공연(10.29.), 해외 공연(11.9.), 후속 홍보 및 음원 제작(11월 말)을 계획하였음.

9)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서의 통일 필요성 ‘공감’ 추이: 2018년 70.7% → 2019년 65.6% → 2020년 60.2% → 2021년 58.7% → 2022년 53.4% → 2023년 53.9% → 2024년 4월, 52.9%

10) △서울 6.21.~22. 청계광장, △인천 9.7., 인천시청 광장, △춘천 10.25.~26., 강원권 통일+센터 개관 계기 춘천시 수변공원 일대

< ‘통일문화진흥’의 일반용역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결산	2024		2025안	증감 (증감을)
		예산	집행액		
통일문화 진흥	1,069	894	400	1,296	402(45.0)
(일반용역비)	(975)	(790)	(334)	(1,190)	400(50.6)

자료: 통일부(집행액은 10.18. 현재 기준)

통일부는 2025년에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형’ 통일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문화행사의 전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먼저 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임.

< 광복 80년 기념 국민 참여형 통일문화행사 사업(안) 개요 >

□ 8.15km, 통일희망·국민통합 마라톤(4억원)

- 광복 80년, 분단 80년 기념하여 통일부 최초로 ‘통일로 하나되는’ 마라톤 행사 개최
- 코스(안) : 파주 통일대교 부근* 또는 서울 (8.15km)
 - * 파주 판문점 견학안내소 - 통일대교 - 도리산역 남북출입사무소 구간(국방부 협의 필요)
- 젊은 세대 및 마라톤 인구(약 400만)의 대회 참가를 통해 통일 정책고객으로 적극 유입시키고,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
 - 현장행사 기념식(대회 개막 선언 및 통일부 장관 기념사, 축하 공연 등) 및 부대 행사(광복 80년 홍보 부스) 운영 등
- 유사 행사 사례 : DMZ 평화마라톤(파주시 주최, 4억원)
 - 대회명 : 남과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2024 DMZ 평화마라톤
 - 대회일시·장소 : 2024. 4. 28. (일) / 임진각 평화누리 공연장
 - 참가부문·인원 : HALF 및 10K / 약 3,000명 참가

자료: 통일부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정부가 실시한 기념행사를 살펴보면, 당시 문체부에서 마라톤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바, 통일부가 2025년도에 통일문화행사로 마라톤 행사 등을 기획함에 있어 타 부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소관 부처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통일부	Fair Unikorea (평화통일 박람회)	‘분단·통일 사료관’, ‘분단의 풍경 사진전’, ‘남북 문화예술 전시관’ 등 개최	1,000
	통일문화 스페이스 조성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통일을 주제로 예술조형물·전시공간·야외무대 등의 문화공간을 조성	1,000
문체부	광복 70년 기념 문화행사	국민체험행사, 음악회, 마라톤 등 문화행사 개최	2,000
	광복 70년 한민족 합창축제	광복 관련 국내외 인사 초청, 한민족 합창축제 개최	400
문화 재청	항일독립운동 문화재 특별전시회	항일독립운동분야 등록문화재 특별전시회 개최	200
국가 보훈처	8·15기념 해외 경축행사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경축행사 개최 지원	280
	독립유공자 후손 등 초청	광복 70주년 행사 독립유공자 후손 등 초청 확대	130
	독립운동 자료집 발간	한국독립운동 지원한 외국인 화보집 등 발간	110

자료: 통일부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국제통일기반조성 (1031-302)	2,721	2,595	3,077	482	18.6
-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418	447	447	-	-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1,554	1,720	2,520	800	46.5
- 해외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749	428	110	△318	△74.3

자료: 통일부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및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와의 북한·통일학 학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25억 9,500만원 대비 18.6%인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3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에서 8억원이 증액되었고, 해외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에서 3억 1,800만원이 감액됨.

□ 국제한반도포럼(GKF),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통일부는 동 사업에서 2023년부터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강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지원’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하고, 해외 여론 주도층과 2030세대를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에 포함된 5개 사업 중 ‘국제회의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는 한반도국제포럼(KGF) 등 국제회의 및 전문가 세미나 운영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제포럼 개최에 12억원, 해외 세미나 개최에 3억 8,800만원, 해외여론 주도층 활동 지원에 1억 3,500만원,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1억 2,500만원 등 총 19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8억 100만원이 증액됨.

<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결산	2024		2025안	증감	증감율
		예산	집행액			
국제통일기반조성 (1031-302)	2,721	2,595	1,791	3,077	482	18.6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1,554	1,720	1,031	2,520	800	51.5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	1,052	1,132	646	1,933	801	70.6

자료: 통일부

2023년도의 경우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 내내역사업의 당초 예산 12억 8,800만원 중 1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 '2024 한반도국제포럼(KGF)'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한 반도”를 주제로 하여 9월 3일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6월 25일 일본에서 국외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연내 미국에서 국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의 일반용역비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결산	2024예산		2025 예산안	증감 (증감율)
		예산	집행액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1,554	1,720	1,031	2,520	800(46.5)
(일반용역비)	(1,229)	(1,384)	(839)	(2,181)	797(57.6)

자료: 통일부(집행액은 10.18. 기준)

한반도 통일이 지역 및 세계 평화에도 직접 기여한다고 볼 경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널리 인식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국제회의 차원에서 2010년부터 매년 '한반도국제포럼(KGF)'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반도국제포럼(KGF)이 통일부가 주관하는 대표 국제포럼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도에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 포럼의 위상을 제고, 국제한반도포럼(GKF)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우리 주도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7억 8,800만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15억 8,800만원을 위탁비로 편성하고 있음.

< 국제한반도포럼(GKF) 위탁비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산출 내용
1,588	○ 위탁비: 1,588백만원 △인건비 150 △일반관리비 등 128 △국내외 세미나비(사례비, 여비, 오만찬비, 임차료 등) 1,310

자료: 통일부

2015년 '광복 70주년'에서 한반도국제포럼(KGF)과 세계평화회의로 나누어 추진하던 기념행사를 2025년 '광복 80주년' 행사에서는 국제한반도포럼(GKF)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인 바, 두 기념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광복 70주년·80주년 기념 포럼 예산 비교 >

(단위: 백만원)

비 목			세부 내역	광복 70주년 (2015)		광복 80주년 (2025안)
				한반도 국제포럼 (KGF)	세계 평화회의	국제한반도포럼 (GKF)
210-01 일반수용비			· 기술평가회의 사례비, 조달수수료, 사후원가계산 용역비 등	35	25	미편성
210-14	인건비		· 총괄 코디네이터 · 해외초청자 섭외 및 관리 등	68	50	150
	국내 세미나 (1회)	사례비	· 기조연설, 사회, 토론, 발제 사례비 등	60	550	550
		운영비	· 초청경비(항공·숙박), 행사 진행비 등	303	187	500
	국외 세미나 (2회)	사례비	· 기조연설, 사회, 토론, 발제 사례비 등	13	-	30
		운영비	· 초청경비(항공·숙박), 행사 진행비 등	75	-	230

비 목		세부 내역	광복 70주년 (2015)		광복 80주년 (2025안)
			한반도 국제포럼 (KGF)	세계 평화회의	국제 한반도 포럼 (GKF)
	기 타	·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111	162	128
240-01 사업추진비		· 행사준비 회의 및 기관업무 협의 등	16	15	미편성
총 계			681	990	1,588
			1,671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15년 '광복 70년' 행사에서 한반도국제포럼(KGF) 국내세미나의 경우 평년 수준으로 개최하면서 일반전문가를 초청하였으나,

2025년 국제한반도포럼(GKF) 국내세미나에는 세계적 저명연사(4명)의 기조강연, 중량급 전문가 초청을 위해 사례비 등으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동 포럼의 국외세미나의 경우에도 2015년 대비 초청연사 인원을 확대하고 10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례비 증액분 등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반도국제포럼 개요 및 현황 >

구분	광복 70주년 (2015)		광복 80주년 (2025안)
	한반도국제포럼 (KGF)	세계평화회의	국제 한반도 포럼 (GKF)
주제	분단 70년 - 한반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평화의 지구와 한반도 평화	미정
주최/주관	통일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부·통일준비위원회·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 주최), 통일연구원·한국정치학회(공동 주관)	-
개최 일시 및 장소	2015.6.30(화)-7.1(수),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메랄드홀	2015.10.29.(목),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세미나	△한반도의 미래와 동아시아	△변화하는 세계와 평화	-

구분	광복 70주년 (2015)		광복 80주년 (2025안)
	한반도국제포럼 (KGF)	세계평화회의	국제 한반도 포럼 (GKF)
주제	질서 △한반도의 통일 미래상과 국제사회의 협력 △국내(서울, 6.30~7.1) 1회, △국외 2회(벨기에 브뤼셀, 10.1 / 미국 워싱턴 11.10.)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개발과 세계경제의 역할 △인권과 평화증진을 위한 세계 공동체의 노력	
참석자 (외부 초청자)	총 460여 명 - 기조연설: 크리스토퍼 힐(미 덴버대 국제대학원장) - 발표자: 프랭크 자누지(맨스필드재단 소장), 알렉산더 제빈(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한연구센터 소장), 루디거 프랭크(비엔나대 교수), 프랑수아즈 니콜라(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 소장), 크리스찬 바그너(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존 에버라드(前 주북영국대사), 준야 나시노(게이오대 교수), 제임스 퍼슨(우드로윌슨센터), 레세크 브진스키(호주국립대 교수), 빌라하리 카우시칸(싱가포르 외교부 무임소 대사), 바실리 미헤예프(IMEMO 부소장), 쉘하오(중국외교학원 전략분쟁관리센터 소장)	총 350여 명 무라야마 도미이치(전 일본 총리), 김 캠벨(전 캐나다총리), 로버트 힐(전 호주국방장관), 도날드 존스턴(前 OECD사무총장), 토마스 번(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	- 기조연설: 전직 국가정상, 전직 고위관료, 세계적 권위의 학자 등 저명인사 - 발표·토론자: 주제에 따른 전문가

자료: 통일부

10년 동안 인상된 인건비 등 각종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과도하지 않은 행사 규모로도 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초청되는 저명인사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례비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통일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인정되어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등 예산 집행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C=B-A)	%
[1500] 북한정세분석			12,203	13,998	19,205	5,207	37.2
	[1533]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강화		5,900	4,159	5,376	1,217	29.3
		[30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	340	340	순증
		[302] 북한 경제사회 심층 정보 수집	348	-	-	-	-
		[307] 정세분석 역량 강화	1,764	2,282	2,251	△31	△1.4
		[50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정보화)	3,788	1,887	2,785	908	48.4
	[1535] 북한자료센터 운영		6,303	9,839	13,829	3,990	40.6
		[308] 북한자료센터 운영	1,281	1,011	892	△119	△11.8
		[31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5,022	8,828	12,937	4,109	46.5

자료: 통일부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은 북한정보 수집·분석 및 정세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 상황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 및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39억 9,800만원 대비 37.2%인 52억 700만원 증액된 192억 500만원임.

나. 세부사업

(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1533-301)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	340	340	순증
-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	340	340	순증

자료: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1533-301)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북한의 경제·사회·주민생활·주민의식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와 같은 공개보고서 발간 등 조사 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은 '10~'23년 추진했었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¹¹⁾을 재개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탈북민 대상 1:1 설문조사, 심층 면접을 통해 북한의 경제, 사회, 주민의식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사업임.

예산의 비목별 분류를 살펴보면,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수집'과 '자료에 대한 연구·분석'을 각각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비목별 예산 산출 근거 >

○ 일반연구비(260-01)(조사팀) 180백만원

* △인건비 24백만원 △정량조사비 126백만원 △인쇄비 1백만원 △기타 29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연구팀) 155백만원

* △인건비 41백만원 △정량조사비 28백만원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61백만원 △기타 2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5백만원

* △자문평가 개최에 따른 사례비 1백만원 △조달수수료 4백만원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5년 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4월에 탈북민 면접에 착수하고, 11월에 보고서를 마무리 한 뒤 12월에 보고서 발간 및 북한실상 알리기 사업에 활용할 계획임.

11) '10~'23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역시 탈북민 대상 1:1 설문조사,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6,000여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1,100여개 문항 설문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24년 2월)를 발간하였음.

< 월별 사업 추진계획 및 절차 >

기 간	추진 일정
1월	기본계획 수립
2월	조달청 계약 의뢰(예정금액 3.4억원)
3월	계약체결 및 설문지 수정
4월~8월	면접 착수·진행, 보고서 작성
8월~11월	정성조사 보완, 정량조사 분석 및 평가 및 보고서 마무리
12월	보고서 발간 및 북한 실상 알리기에 활용

자료: 통일부

코로나19와 UN의 대북제재를 거치면서 북한의 탈북 방지를 위한 국경 단속과 폐쇄성이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많이 감소된 상황에서 북한을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인바, 북한 경제·사회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북한 주민 변화상을 지속 추적할 수 있는 동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 및 하나원 입소·수료 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입국인원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입소인원	1,182	1,391	1,209	1,034	1,049	404	73	59	176
수료인원	1,171	1,311	1,221	987	1,210	538	87	50	144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는 국정원 보호센터 조사를 시작으로 3개의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조사」가 추가될 예정임.

<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실시 현황 >

구분	법적근거	비고
국정원 보호센터 조사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제3항	보호신청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	3년마다 조사, 거주지 전입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인권실태조사	북한인권법 제13조	하나원 입소자 대상 전수 조사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	하나원입소자, 사회진출자 대상

자료: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조사는 하나원 입소 및 사회 진출 만18세 이상 탈북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연구용역으로 진행하는 만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연구자 선정, 심층면접을 위한 조사원 교육 실시, 이후 하나원 입소자와 사회진출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¹²⁾

유사한 조사로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있는데,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직접 조사(2017년~)하는 것으로, 두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설문과 심층 면접을 대면조사로 진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

12) 과거 조사 대상자 수:
(‘20년) 하나원 66명/ 사회진출자 335명
(‘21년) 하나원 20명/ 사회진출자 195명
(‘22년) 하나원 12명/ 사회진출자 122명)

으나 조사의 법적 근거, 목적, 방법, 항목, 조사 결과의 활용 방식 등에는 차이가 있음.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는 북한 경제·사회 및 주민의 생활상의 실상과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분석국의 예산사업(연구용역)으로, 북한연구기관 및 리서치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설문 문항의 설계, 조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대북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함.

‘인권실태조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행하는 법정조사(직접조사)로, 국제규약 및 향후 책임규명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조사관을 채용하여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를 수집·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법정 문답서의 형태로 기록·관리함¹³⁾.

한편, 통일부는 두 조사를 토대로 각각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20년 이상의 북한 경제, 사회, 주민 의식 분야의 변화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정량적·객관적으로 파악·전달 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북한인권보고서」는 ‘국제인권규약(자유권·사회권 등)’을 중심으로, 탈북민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대표적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토대로 북한인권 실상을 정확하게 기록·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답서를 매 분기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

< 2025년 예산 기준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상담 사업 내역 >

(단위: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누적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1,047	229	63	67	196	105 (상반기)	1,707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조사 인원	합계	602	401	215	134	-	-	1,352
	하나원입소자	393	66	20	12	-	-	491
	사회진출자	209	335	195	122	-	-	861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원	합계	1,009	397	80	47	141	134	1,808
	하나원입소자	996	374	67	47	141	128	1,753
	사회진출자	13	23	13	0	0	6	55

자료: 통일부(2024년 8월말 기준)

최근 북한과의 대화 단절로 인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축소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대북 정보 파악의 어려움 속에서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 조사를 하는 사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바, 이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영위상 불편을 불러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북한의 국경 단속 강화에 따른 직접 탈북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 경유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어,¹⁴⁾ 제3국에 거주 기간이 길거나, 사회진출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인식을 조사한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사업들을 부서간의 협의를

14) 통일부는 제3국 경유 탈북자 현황자료에 대해 입국경로는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여건 및 관계국과의 협조관계 등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통해 상호 간 긴밀히 조율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한편, 북한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 탈북한지 일정 기간 이내의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대상 수 감소에 따라 적은 표본에 대한 심층 분석이 보다 중요해지므로 심층분석 능력이 검증된 적절한 기관에 수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심층 조사에 따른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사회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정세분석 역량강화	1,764	2,282	2,251	△31	△1.4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100	100	100	-	-
-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303	298	308	10	3.3
- 정보상황실 운영	892	880	928	48	5.5
- 위성정보센터 운영	72	557	595	38	6.8
- 통일·북한연구 신진학자 양성	80	-	-	-	-
-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316	240	220	△20	△8.3
-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	207	100	△107	△51.7

자료: 통일부

‘정세분석 역량강화’(1533-307)는 북한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과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한 관련 정세분석의 질을 제고하고 대북 및 통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22억 8,200만원 대비 △1.4%인 3억 1,000만원 감액된 22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에서 2,000만원,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에서 1억 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정보상황실 운영에서 4,800만원, 위성정보센터 운영에서 3,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북한의 공식매체 등의 송출방식 변경에 신속 대응 필요

‘정보상황실 운영’ 내역 사업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공식매체 및 선전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실시간 수집하여 관련 내용을 전파, 신속·정확한 정세분석업무 및 정부 상황대응 체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9억 2,800만원임.

< 2025년도 정보상황실 운영 내역사업 기능·비목별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2023 결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 정보상황실 운영	902	902	892	－	10	880	880	928
· 상용임금 (110-03)	141	141	141	－	－	158	158	162
· 일반수용비(210-01)	14.9	14.9	9	－	6	4	2	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7	1.7	1.7	－	－	12	12	5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5	7	54
·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2
· 관리용역비(210-15)	414	414	412	－	2	368	368	419
· 고용부담금(320-09)	29	29	27	－	2	31	31	32
· 자산취득비(430-01)	300	300	300	－	－	300	300	200

자료: 통일부

정보상황실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 공공요금및제세(210-02) 항목으로 5,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1,200만원, 700만원에 비해 각각 대폭 증가한 금액임.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

의 공식매체 및 선전매체의 방송 송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등 시설 설치 및 회선 사용료를 공공요금및제세(210-02),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집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북한이 기존 중국 위성 사용을 중단(7.1.)하고 러시아 위성으로 조선중앙TV 방송을 송출하면서 러시아 위성 주파수와 우리측 5G 주파수간 혼선이 발생하여 수신 장애가 발생하였고, 통일부는 동 사안 해결을 위해 5G 클린지역에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는 광화문 청사에서 직접 수신하여 발생하지 않았던 추가 수신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매월 360만원씩 12개월치가 반영되어 4,300만원이 증액됨.

또한, 안테나를 설치하고 운용하면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전년보다 4,900만원 증가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리용역비(210-15)는 5,100만원 증가한 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통일부가 북한 정권의 정세분석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상황대응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상황실을 운영한다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공식매체 및 선전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 업무의 내용이라 할 것인바,

2024년도와 같이 북한 매체의 방송 송출 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수신하기 위한 특수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로 그 금액이 과도하게 소요될 경우 회계연도 중간에 이에 대응한 예산을 긴급하게 이·전용하여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4.7.24.)	정세분석 역량강화 (1533-307)	210-01	2	정세분석 역량강화 (1533-307)	210-09	북한 방송 송출 위성 변경에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위성 수신 점검비 부족분 총당

자료: 통일부

따라서, 향후에도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따라 북한의 공식매체 및 선전매체의 송출방식 변경 또는 암호화 송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일부는 이에 안정적인 영상확보 방안 및 송출방식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추후 유사 상황 발생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자료센터 운영	1,281	1,011	892	△119	△11.8
- 북한자료센터 운영	1,281	1,011	892	△119	△11.8

자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은 북한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활용, 북한 정세분석을 지원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10억 1,100만원 대비 11.8%인 1억 1,900만원 감액된 8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 예산 편성시 주의 필요

통일부는 2025년도 예산안 중 북한자료센터 운영 세부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를 위한 실내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 산출 세부내역 >

- ⑦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 : 22백만원(+22, 순증)
 - 실내디자인 기본계획(210-14) : 22백만원
 -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제작 및 배치 계획 x 1식 = 22백만원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 '27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공간별 특성 및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전문적인 공간·실내 디자인 기본계획이 필요하고, 기본계획 결과물을 토대로 실내디자인 세부 예산 수립·증액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개요 >

- 목 적 :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여 통일·북한 전문·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6
- 규 모 : 부지 4,120㎡(1,246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총사업비 484억원
- 사업기간 : '22~'26 ('24.12. 착공 → '26.12. 준공 → '27. 상반기 개관)

자료: 통일부

건물의 외관 못지 않게 전문적인 공간·실내 디자인이 중요하므로 세부적인 공간 컨셉 도출,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제작안을 사전에 계획한다면,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가능하므로 그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음.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¹⁵⁾에 따르면 건축공사의 경우 실내인테리어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총사업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건축 기본 설계 단계에서 실내인테리어 부분을 포함시켜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4억원에 달하는바, 그 기본계획에 실내 인테리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통일정보자료센터 실내디자인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분의 비용 등이 기존 실시설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 계약 현황 >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기관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에스파스	7억9,000만원	'24.6.21	'24.6.21 ~ 12.22	수의	고양시

자료: 통일부

15)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 7] 부문별 타당성재조사 표준지침

1.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변경요인

라. 실시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는 기본설계 완료 후 이를 기초로 시공을 위한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시 미반영된 부분과 시설수요처의 요구로 인한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축계획의 부분적 변경, 건축면적의 변경 및 증가, 사용재료의 변경, 기계·전기의 적용시스템 변경, 사용장비 및 기자재의 변경 등이 있다.

기본설계 시 정확한 공사비 추정에 한계가 있어 실제 공사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비 초과 시 장비, 가구, 인테리어공사 등을 별도공사 항목으로 분류하여 자체공사로 수행하거나 추후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본 사업비에는 제외하여 산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발주용 공사비는 감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총사업비가 증가한다.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5,022	8,828	12,937	4,109	46.5
- 건설보상비(410-00)	4,742	4,662	4,611	△51	△0.99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09	-	-	-	-
- 실시설계비(420-02)	171	-	-	-	-
- 공사비(420-03)	-	3,776	7,552	3,776	50
- 감리비(420-04)	-	373	747	374	101
- 시설부대비(420-05)	-	17	27	10	58.8

자료: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은 북한자료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장서확충·열람공간 확대를 통해 북한연구자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려는 사업임.

신축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북한전문도서관으로서 온·오프라인 학술·연구 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사료 수집·전시, 민간·연구기관을 위한 열린 공간(플랫폼) 공유·개방 등 통일문화 복합 기능도 수행할 예정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88억 2,800만원 대비 46.5%인 41억 900만원 증액된 129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비목별로는 건설보상비(410-00) 46억 1,100만원, 공사비(420-03) 75억 5,200만원, 감리비(420-04) 7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420-05)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안정적 사업추진 필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직접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88억 2,800만원 대비 41억 9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700만원으로 편성됨.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83억 5,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부지 규모는 약 4,120㎡ 내외, 건축 연면적은 약 8,463㎡ 내외로 계획하고 있음. 동 사업은 건축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므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임.¹⁶⁾

< 총사업비 정보(연도별) >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1까지 기투자액	2022	2023	2024	2025	2026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2~'26	-	27.74	50.22	88.28	129.37	180.05	475.66

* 자료: 통일부

< 총사업비 정보(용도별) >

(단위: 억원)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177.21억	19.46억	257.21억	29.10억	0.58억	483.56억

자료: 통일부(고양시 부담분(부지변경에 따른 채설계비) 7.9억원 포함)

16)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 총사업비 변경내역 >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445.05	2022	2026	
(1)차 변경	2023		447.92	2022	2026	감정평가 결과 반영 등
(2)차 변경	2023		489.42	2022	2026	기본설계 결과 반영
(3)차 변경	2024		473.86	2022	2026	부지변경에 따른 보상비 및 재설계(고양시 부담) 비용 반영
(4)차 변경	2024		483.56	2022	2026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증액
2025년도 요구			129.37			

자료: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의 총사업비는 2024년도에 2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의 각 단계별 추진일정도 변경되었는데, 제4차 변경 기준 2024년 12월 공사를 시작하고, 2026년 11월 완공 및 준공, 2027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임.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단계별 추진 일정 >

구분	실시설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협의	공사업체 공모	공사	준공	개관
추진 일정	'24.05.~ '24.06. (2개월)	'24.06.~ '24.08 (3개월)	'24.07.~ '24.08 (2개월)	'24.09.~ '24.11 (3개월)	'24.12~ '26.11 (23개월)	'26.11	'27년 상반기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최종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이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관리함으로써 향후 준공 및 개관 일정에 있어서 더 이상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3.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C=B-A)	%
[2100] 인도적 문제해결			6,046	13,167	21,174	8,007	60.8
	[2133]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1,124	1,326	1,490	164	12.4
		[302]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12	504	504	-	-
		[306]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11	406	601	195	48.0
		[505]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402	416	385	△31	△7.5
	[2135]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강화		3,520	10,422	18,205	7,783	74.7
		[30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407	5,794	12,442	6,648	114.7
		[30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716	860	964	104	12.1
		[304] 북한인권재단 운영	-	475	475	-	-
		[305]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	164	131	△33	△20.1
		[306]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	2,749	3,813	1,064	38.7
		[501]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97	380	380	-	-
	[2137]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1,402	1,419	1,479	60	4.2
		[301]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02	1,419	1,479	60	4.2

자료: 통일부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31억 6,700만원 대비 60.8%인 80억 700만원 증액된 211억 7,4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단위사업인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1억 6,400만원,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강화 사업에서 77억 8,300만원,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에서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나. 세부사업

(1)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12	504	504	-	-
-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82	82	82	-	-
- 초청행사 및 위로 사업	330	322	322	-	-
-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	100	100	-	-

자료: 통일부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은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성 있게 대처하고,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통해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등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과 동일한 5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인도적 사안인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내역사업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는 법정 기념일 행사를 통해 이산의 고통을 국가적으로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사업 예산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0	○ 일반수용비(210-01) : 5백만원 가. 홍보 및 사례비 등 : 1회 × 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014) : 95백만원 가. 기념행사 위탁용역 : 1회 × 95백만원	100	○ 일반수용비(210-01) : 5백만원 가. 홍보 및 사례비 등 : 1회 × 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014) : 95백만원 가. 기념행사 위탁용역 : 1회 × 95백만원

자료: 통일부

2024년 8월 현재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은 82.8세이고, 매년 3천명 이상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전체 신청자 13만 4,158명 중 생존자는 3만 7,806명(28.2%)에 불과한 바,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떨어지고 있음.¹⁷⁾

이에 이산가족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¹⁸⁾을 개

17) 초·중고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21년 21%에서 2023년 15%로 지속적으로 감소(자료: 통일부, 「2023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1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

정(2023.3.28.)하여 이전까지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 1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¹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통일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9,500만원의 예산으로 제1회 및 제2회 이산가족의 날²⁰⁾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지만, 다양한 행사나 홍보 활동이 다소 부족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²¹⁾

2024년에 시행된 다른 기념일의 행사예산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에 3억 5,400만원, 노인의 날 기념에 3억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에 2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²²⁾ 기념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 등 부대행사를 통해 기념하고 있음.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8.]

19)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남북적십자회담 11주년인 1982년 8월 12일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한 대한적십자사의 취지를 다짐하면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매년 기념식과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음. 2011년부터 매년 추석 전전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오다가 법률에 규정됨.

20) 2024년 제2회 이산가족의 날(9.15. 추석 전전날)에는 9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서 이산가족의 추억이 서린 기증품과 이산 사연이 담긴 인터뷰 영상 등으로 구성된 ‘희미한 기억, 짙은 그리움’ 전(展)을 개최하였음. 또한 9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동 박물관 로비에서 이산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고령의 이산가족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고, 박물관 광장에서는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홍보영상 상영 및 유전자 채취, 통일관련 퀴즈대회, 추석을 앞둔 만큼 다양한 전통놀이(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체험행사가 열렸음.

21) 2024년 9월 15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도 (누님 두 분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으로 2010년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 중 최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마침내 큰 누님을 상봉할 수 있었다”면서 “반세기보다 더 긴 60년 만의 만남은 2박 3일 순간으로 지나고 북으로 떠나는 버스를 눈물로 배웅하면서 단장의 고통이라는 생이별의 고통을 절절하게 실감했다”고 하였고, 이산가족 고령화로 상봉 재개가 시급한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상시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당장 어렵다면 서신 교환과 통신 왕래만이라도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바 있음.

22) '24년 기념행사 관련 나라장터 입찰공고 예산

＜ 기념일 행사 예산 비교 ＞

부처명	행사명	과업내용	예산	정책대상	근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	▪ 사전홍보(온·오프라인) ▪ 기념식 진행 및 무대구성 ▪ 시민참여행사	3.54억	탈북민 및 전국민	기념일 규정
통일부	이산가족의날	▪ 기념식 진행 및 무대구성 ▪ 참석자 오찬	0.95억	이산가족	이산가족법
통일부	통일교육주간	▪ 사전홍보(온·오프라인) ▪ 개막식 진행 및 무대구성	2.4억	전국민	통일교육지원법
재외동포청	세계한인의날	▪ 기념식 진행 및 무대구성	1억	재외동포	기념일 규정
복지부	노인의날 기념식	▪ 사전홍보(온·오프라인) ▪ 기념식 진행 및 무대구성 ▪ 부대행사(학술포럼 등)	3억	노인	기념일 규정
행안부	이북도민 체육행사	▪ 개·폐회식 진행 ▪ 운동경기 진행	2.5억	이북5도민	이북5도법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기관별 제안요청서(2024년 기준)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기념행사와 관련된 적정 소요액을 반영함으로써 기념식 외에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한편,²³⁾ ‘이산가족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기념일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3)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84) 비용추계서에서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따른 재정소요를 연평균 3.6억으로 추계한 바 있음. 2022년 9월 비용추계 당시, 타 부처 기념일 행사사례(인권의 날, 바다의 날, 여성의 날, 세계인의 날)를 참조하여 2022년 기준 평균 예산액(3억 6,100만원)에서 (사)일천만이산가족 위원회에 기 지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 행사비(1,700만원)를 제외한 3억 4,4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2)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11	406	601	195	48.0
-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85	185	185	-	-
- 남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13	150	325	175	116.7
-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사업	-	52	62	10	19.2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9	19	29	10	52.6

자료: 통일부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은 전후납북자단체 및 귀환납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 가족을 위로하고, 북한주민 송환 및 사체 인도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4억 600만원 대비 48.0%인 1억 9,500만원 증액된 6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남북피해가족의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위로금 등 보상금 지급,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추진, 납북자 문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남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서 1억 7,500만원,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에서 1,000만원,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에서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귀환 납북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내역사업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납북자 피해자 보상금,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납북자·역류자 문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2025년도 전년도 대비 1억 7,500만원 증액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통일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00년 이후 귀환한 전후납북자의 국내 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 표명을 위해 2009년부터 사회적응지원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0년까지 정보수집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사업예산²⁴⁾으로 편성하였다가 2021년부터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일반예산-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²⁵⁾ 체결일(1953. 7.27.) 이후 납북된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고, 이 중 3,310명은 납북 직후 북한에 의해 송환되었으며, 2000년 이후 스스로 북한을 탈출하여 귀환한 납북피해자는 9명임. 2024년 10월 현재 기준, 이 가운데 6명이 생존하고 있음.

24) 2020년까지의 정보비 편성내역은 「국회법」 제37조 및 제84조제4항,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정보 및 보안업무계획·조정 규정」(대통령령)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국회정보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미공개

25)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임.

< 귀환납북자 통계 >

(단위: 명)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3	계
인원	1	1	0	1	0	1	0	2	1	1	0	1	9

자료: 통일부

< 귀환납북자 용역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안)
대상인원	8	7	7	6	6
예산액 ^{주)}	20	20	15	15	50

자료: 통일부(2020년 이전까지의 정보비 편성내역은 국회정보위원회 소관 사항, 미공개)

현재 귀환 납북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한 건강 질환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고립감,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바, 통일부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귀환 납북자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사업 절차 및 2022-2024 용역비 집행내역>

사업계획 수립(통일부) → 용역 발주(한국사회복지관협회) → 계약
→ 용역수행(생활지원·사례관리·월간모니터링·중간보고) → 최종보고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약일자	4.11.	4.11.	1.15.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약업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계약금액	20백만원	15백만원	15백만원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 10월에 홀로 생활하던 귀환 납북자가 자택 인근에서 낙상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고독사의 위험을 예방하고 위기징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늘리고 심리상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존 예산(1,500만원)으로는 귀환 납북자 1인에 연 평균 200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 바, 연간 8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증액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 2025년 귀환 납북자 지원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만원)

구 분		지원 내용	비고
사례관리		- 월 2회 이상 가정 방문 상담 - ‘위기도 조사지’ 설문조사 작성 - 서비스 지원현황 모니터링 - 가정방문 외 유선 등 방법을 활용한 추가 상담	年 100 (월 8.3)
서비스 지원	일상생활 지원	- 균형 잡힌 영양 관리(식료품 구입, 반찬 지원 등) - 개인 위생관리(생필품, 손소독제 등) - 생활용품(혹서기&혹한기 대비용품, 의류 등) - 명절 및 생일 축하 등	年 300 (월 25)
	의료비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의료보장기구 등	年 200 (월 16.6)
	주거환경 개선	- 집수리,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등	年 200 (월 16.6)

자료: 통일부

동 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방부의 ‘귀환 국군포로 사후관리’ 사업²⁶⁾에서는 귀환 국군포로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일상지원 등

26) 국방부는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귀환 국군포로 8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북한인권 정보센터(NKDB)의 부설기관이자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주)엔케이소셜리서치에 동 사업을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음. 2024년 10월 현재, 71명이 사망하여 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만,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는 10명이 생존.

사례관리,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 콜센터 운영, 개인별 심리상담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귀환 국군포로 10명 지원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²⁷⁾ 이는 귀환 국군포로 1인에게 연 평균 약 1,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임.

귀환 납북자가 비록 귀환 국군포로와 같은 보훈예우의 대상은 아니지만, 통일부는 귀환 납북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납북의 피해를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귀환 납북자 지원 용역은 금년도까지 “2천만원 이하”의 용역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국가계약 법령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2천만원 초과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용역을 추진해야 함.

다만, 이와 같이 원칙에 따른 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용역이 가능한 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최종적으로 다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귀환 납북자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원(역무) 제공의 계속성 및 안정성 차원에서 국가계약 법령의 예외 조항²⁸⁾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7)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명 ‘정책기획지원(5136-302)’의 내역사업 ‘귀환 국군포로지원’ 2억 8,500만원 중 일반용역비 1억 4,100만원 편성, 예산안 편성 이후 1명이 사망하여 10월 현재 생존한 귀환 국군포로는 9명임.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북한주민 사체에 대한 통합적인 추모공간 마련 방안 검토 필요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내역사업은 북한 주민 송환 및 사체 인도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북한주민사체 통합추모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산출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	인도적 송환업무 관리를 위한 사체 수습 · 인도 ○ 사체 수습 안치 및 인도: 15 - 사체 수습 및 인도 5명 × 3 ○ 인도적 송환업무 관련 업무협약: 3.6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12회 × 3만원 × 10명	29	인도적 송환업무 관리를 위한 사체 수습 · 인도 ○ 사체 수습 안치 및 인도: 15 - 사체 수습 및 인도 5명 × 3 ○ 인도적 송환업무 관련 업무협약: 3.6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12회 × 3만원 × 10명 <u>○ 사체 통합 추모 공간 마련 10백만원</u> - 통합추모 공간 마련 4구 x 2.5백만원 = 10백만원

자료: 통일부

통일부 장관은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훈령 제863호) 제6조 제1항29)에 따라 북한이 인수를 거부한 사체에 대해서는 이를 화장하여 일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목-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② ~ ⑥ (생략)

29)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제6조(북한이 인수를 거부한 사체 등의 처리) ① 북한이 인수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정한 곳에 안장할 수 있는데, 2018년 이후 북한이 미인수한 사체 총 4구에 대해서 지자체가 무연고 처리 후 유골함을 안치 중에 있음.³⁰⁾

그러나, 지자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³¹⁾에 따라 일정기간(기본 5년) 경과 시 무연고자 유골함을 산골³²⁾ 처리하므로 그 전에 북한주민사체 유골을 별도의 추모공간에 안치하려는 것임.

< 월별 사업 추진계획 및 절차 >

기 간	추진 일정
3월	민간 추모 시설과 협의
4월	이관 관련 지자체 협의
5월	이관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을 통해 북한주민의 사체 안장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책임을 다하고, 흩어져 있는 북한주민 유골함 통합 관리를 통해 사자의 존엄성을 확보하며, 추후 남북관계 호전시 또는 남북대화 재개시 사체를 북한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가족과 연고자에게 애도와 심적 치유를 제공하면서,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주민 사체를 소홀히 처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인수를 거부한 북한주민사체로서 남한에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남한의 연고자가 그 처리를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그 북한주민사체를 화장하여 일정한 곳에 안장할 수 있다.

30) 인천시 동구 소재 2구(2023), 경기도 파주시 소재 1구(2019), 연천시 소재 1구(2022)

31)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32)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장례 방법

다만, 현재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주민사체를 민간 추모시설에 안치하는 것으로 1구당 250만원으로 계상하여 사체 4구 총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급하게 추모시설 안치가 필요한 사체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1구(2019)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250만원의 예산만 소요되는데 그치지만,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체 4구를 한번에 별도의 추모공간으로 안치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별도의 추모공간이 마련된다면 북한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여 우리 정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북한이나 제3국에 있는 유족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 추모를 위해 추모공간을 방문하기에도 용이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현재의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과 예산 배정방식을 살펴볼 때, 향후 북한주민 사체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그 때마다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북한주민 사체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정기간 내에 북한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통합 추모공간으로 안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면 향후 예산 배정 및 대규모 사체 발생에 따른 대비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주민 사체의 통합 추모공간 마련과 함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발생될 사체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407	5,794	12,442	6,648	114.7
- 북한인권 개선정책 기획·조정	40	54	54	-	-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268	1,029	1,637	608	59.1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99	82	69	△13	△15.9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2,000	-	-	-	-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	4,629	10,682	6,053	130.8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은 북한인권 개선정책 기획 및 조정,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국제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북한인권 실상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한 사업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57억 9,400만원 대비 66억 4,800만원이 증액된 124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인권이해 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1억 7,700만원 증액되었고,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강의 제작’에 1억 7,000만원,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에 2억 6,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내역사업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은 6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구분 집행 필요

내역사업 ‘북한인권 개선정책 기획 조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체계적 수행, 실효적인 북한인권 개선정책의 기획,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3개년) 및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매년) 수립,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중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1,022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북한인권법」 제5조³³⁾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구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율 (%)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40	54	54	-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15	10	10	-	-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제1기 위원회(임기: 2017.1.24.~2019.1.23.)가 구성되어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19년 1월 임기 만료 후 국회 교섭단체의 위원 미추천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음.³⁴⁾

33) 「북한인권법」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 위해 통일부 훈령으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3.3.6.)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를 운영(2023.3.10.~현재)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2023년에 회의를 5차례(3.10., 4.13., 6.30. 9.22., 11.21.)를, 2024년에는 현재까지 3차례(3.12., 6.11., 9.11.)를 개최하였고, 2023년에 1,540만원, 2024년 10월 현재까지 87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천 원)

구분	2023		2024		2025예산안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일반수용비	15,000	11,612	6,600	7,383	6,600
여비	-	179	-	130	-
임차료	3,900	-	2,000	495	1,824
사업추진비	1,200	3,607	1,800	765	1,800
계	20,100	15,398	10,400	8,773	10,224

자료: 통일부(2024집행액은 10.18. 기준)

훈령에 근거를 둔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충당하는 것은, 그 명칭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

34)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외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2018.11.9., 2019.1.28., 2019.8.28., 2019.10.22., 2020.3.30., 2022.7.25., 2023.8.30., 2024.7.31. 등)하고 있음.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비교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근거 법령	「북한인권법」 (법률 제14070호, 2016. 3. 3. 제정)	「북한인권증진자문 위원회 운영규정」 (통일부훈령 제537호, 2016.11.11. 제정)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통일부훈령 제651호, 2023. 3. 6. 제정)
기능	제5조(북한인권증진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 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 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 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 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 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 는 국회 보고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제3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 목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 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 는 사업”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북한인권증진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한인권재단의 운 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인권기록센터 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인권분야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일부장 관이 북한인권증진 을 위하여 필요하 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1.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 비 2.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 렴, 공감대 확산 3.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 4. 시민사회 북한인권 증 진활동 지원 5. 그 밖에 북한인권 개 선과 관련하여 통일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위원 수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 (법 제5조) ※현재 미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규정 제3조①)
임기	2년(시행령 제2조② 및 규정 제5조①)		1년(규정 제3조③) ※재단설립 시 해촉 가능 (규정 제4조제5호)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북한인권증진자
문위원회와 구분하여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등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북한인권 국제회의,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 필요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중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9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의 경우에는 국내외 저명인사 약 100여 명을 서울로 초청하였으며, 2024년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2회 개최를 예정하였음.

지난 7월 22일과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미국의 NED(민주주의진흥재단), CSIS(국제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유지태(북한인권홍보대사), 마이클 커비(前 COI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였으며,

10월 28일과 29일, 스위스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국제 인권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제네바에서 북한 제4차 UPR(보편적 정례인권검토)³⁵⁾을 계기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35)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는 제도이며,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2009년, 2014년, 2019년에 이어 2024년 11월 7일 4번째 검토를 받게 됨.

< 2022~2024년 ‘북한인권 국제대화’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 상세
2022년	51,600(국내 1회 개최) - 위탁용역비: 48,000 - 일반수용비: 3,000 - 간담회 : 600	41,772	- 행사용역비 38,500 - 번역사례비 2,673 - 관계자 간담회 등 599
2023년	51,600(국내 1회 개최) - 위탁용역비: 48,000 - 일반수용비: 3,000 - 간담회 : 600	60,874 (초과집행)	- 행사용역비 46,500 - 참가사례비 7,082 - 통역사례비 3,960 - 해외참가자 초청 3,038 - 관계자 간담회 등 294
2024년	767,010(해외 2회 개최) - 위탁용역비: 764,000 - 일반수용비: 2,200 - 간담회: 810	집행·정산중 (중간정산 ×)	- 7월(위싱턴) 개최 - 10월(제네바) 개최
2025년(안)	917,000 (해외 2회, 국내 1회)	※‘북한인권 국제대화’직원 국외여비 33,000 별도 편성 - 항공료 및 체재비: 27,000(순증) - 통역사례비 간담회 등: 600(+3백)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4년까지는 정부가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주도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한국·미국·일본·캐나다·영국 등)의 당국자는 물론 북한인권 저명인사, NGO, 탈북민 등 다양한 관계자를 초청하여 1.5트랙³⁶⁾ 방식의 ‘북한인권 국제회의’로 확대하고, 북한인권의 보편성과 책임성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유엔 인권이사회·총회에서의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또는 정부 「연례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등 주요 계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임.

36) ‘1.5트랙’이란, 정부 인사들에 민간 전문가들이 더해진 반관반민 형태의 대화체제를 의미함.

< 2024년 ‘북한인권 국제대화’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북한인권 국제대화	
주관부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사업목적	-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 환기 및 관심 제고	
사업 내용	-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주도하는 행사 정례화(미국, 유럽, 서울) - 고위급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및 비상채널 구축, 자문·홍보 등 수시 활용	
참여대상	- 국제기구, 연구기관, NGO 및 활동가 등	
예산액	767	(일반수용비) 조달수수료, 사례비 2 (일반용역비) 행사 위탁 764 (사업추진비) 국내외 전문가간담회 1

자료: 통일부

< 2025년 예산안 ‘북한인권 국제회의’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액	2025년 편성 내역
944 (+177)	▪ 북한인권 국제회의 운영: 911(+147) - 위탁사업비: 911(+147) ▪ 북한인권 국제회의 국외출장 여비 등: 33(+30) - 항공료 및 체재비: 27(순증) - 조달수수료, 통역사례비 간담회 등: 6(+3)

자료: 통일부

그런데, 외교부도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1132-401)’의 내역사업 ‘북한인권 역량강화’를 통해 유엔 등 국제기구, 시민단체 인사를 초청한 국제포럼 개최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논의 활성화 및 실질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인권 개선(1034-303)’의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에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9,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외교부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 >

(단위 : 백만원)

구분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	
주관부처	외교부(한반도정책국 대북정책협력과)	
사업목적	-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북한인권 관련 관심 제고 및 논의 활성화 주도	
사업 내용	- ‘북한인권 국제포럼’ 개최 - 주요국 북한인권 협의 -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활동 지원 - 북한인권 아웃리치 강화	
참여대상	-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청년층 등	
2025년 예산액	148 (전년과 동일)	(일반용역비) 국제회의 개최 70 (사업추진비) 국제회의 오만찬 4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 74

자료: 외교부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주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사업목적	-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내용	- 국제 심포지엄 개최 - UN기구 등과의 협력을 위한 출장	
참여대상	-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청년층 등	
2025년 예산액	97 (전년대비 △5)	(일반수용비) 국제회의 개최 29 (임차료) 국제회의 장소 등 임차 20 (국외업무여비) UN기구 협력 40 (사업추진비)업무 협의 등 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외교부는 외교 분야에 있어 비교우위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NGO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북한인권의 문제를 알리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한 차별화 기조 위에서 외교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인권 증진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 등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내역사업 중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 내내역사업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상강의를 제작하여 유튜브·구글클래스룸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시청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내내역사업은 외교부와 협업하여 북한 관련 영문서적을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독자에게 배포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북한 인권·실상 등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및 지지 확대’ 산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산출 내용
430	-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강의 신규 제작: 170 (일반용역비) 170 - 온라인 강의 기획·촬영·편집 등: 5개 과목 x 10차시 x 3백만원 = 150 - 해외전문가 촬영: 5백만원 x 3명 x 1회 = 15 - 홍보 영상 및 포스터 제작: 5
	-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260 (일반수용비) 200 - 도서구입: 40,000원(권당) x 50부 x 100개 공관 (공공요금및제세) 60 5,000부 x 0.8kg(권당 무게) x 15,000(kg당 요금)

자료: 통일부

현 정부는 북한주민이 인류 보편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며,³⁷⁾ 특히 북

37)

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 및 인권증진 필요성 등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북한인권 증진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거주 외국인, 재외공관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영문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한 실태라고 분석하고,³⁸⁾

2025년도 예산안에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재외공관 배포’를 위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가칭 ‘통일 우수 영문서적’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외부인사 포함하여 구성한 후 탈북민 수기 또는 북한 관련 전문서적(정부 발간물 포함) 등 30선 내외의 도서를 선정하여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공관장이 선택한 서적을 구매(공관당 50부)하여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음.

<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추진체계 >

1분기 (1월~3월)	2분기 (4월~6월)	3분기 (7월~9월)	4분기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 서적 리스트 마련·재외 공관 제공	○ 상반기 서적 신청 (100개 공관 각 50부) ○ 서적 발송(외교행낭)	○ 하반기 서적 신청 (잔여 수량 있을 시) ○ 서적 발송(외교행낭)	○ 재외공관 배포 결과 공유

《 북한인권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관련 VIP 언급사항 》

-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23.1.27.)
-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날날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제13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23.3.28.)
-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 ’24.4.5.)

38) 통일부가 47개국 195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4.4.2.~4.12.)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 영상콘텐츠’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 영어 영상콘텐츠(31%) > 토론회 및 포럼 개최(26%) > 견학기회 확대(22%) > 정책설명자료 발간(20%).

동 사업의 1차년도인 2025년에는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100곳을 선정하고, 서적을 수령한 공관장이 주재국의 외교 고위인사 등 유력인사에게 증정(선물)하고 연말에 배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임.

통일부는 북한 관련 외국어 도서 선물을 통해 북한 문제 관련 유사입장국(like-minded) 뿐만 아니라, 비유사입장국(unlike-minded)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³⁹⁾ 국가 등에도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통일부는 또한 재외공관을 통한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의 배포를 통해, 즉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독자에게 북한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공관을 통한 북한 관련 서적 선물하기는 기념품을 배포하는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봄.

대상도서 선정 시 객관성·신뢰성 등을 최대한 검증할 필요가 있고,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해당 도서를 영어번역서로 한정할 경우에는 영어를 모국어 내지 공용어로 하는 국가인 유사입장국(like-minded)에 한정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비영어권 국가인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국가들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봄.

39) 북반구 중위도 및 고위도에 위치하는 선진국 의미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에 대비하여 주로 남반구에 위치하는 비서구권,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

(4)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인권재단 운영	-	475	475	-	-
- 북한인권재단 운영	-	475	475	-	-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은 「북한인권법」 제10조⁴⁰⁾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북한인권재단의 운영과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재단 출범준비 필수비용인 재단 사무실 설치 3억 7,500만원, 2개월분 사무실 임대·관리비 1억원 등 4억 7,500만원으로 2024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40)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	2,749	3,813	1,064	38.7
-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	-	1,830	2,960	1,130	61.7
- 자유민주평화통일담론 확산	-	919	853	△66	△7.2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와 지역 사회 자유·인권·통일 교육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27억 4,900만원 대비 38.7%인 10억 6,400만원 증액된 38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자유민주평화통일담론 확산 사업에서 6,600만원 감액되었고,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에서 11억 3,000만원 증액되었음.

□ 보조단체의 책임성 강화방안 필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내역사업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9억 6,000만원이며, 그 중 북한인권증진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9억 3,000만원, 보조사업 전문 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2025년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예산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30	○ 일반용역비(210-14) : 30백만원 가. 국고보조사업 전문 평가 용역(3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800백만원 가. 북한인권 증진활동 민간단체 지원 (1,800백만원)	2,960	○ 일반용역비(210-14) : 30백만원 가. 국고보조사업 전문 평가 용역(3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930백만원 가. 단년도 사업 보조금 : 2,630백만원 - △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실상 알리기 △학술행사: 20개 단체 × 100백만원 = 2,000백만원 -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의 개발 등: 5개 단체 × 100백만원 = 500백만원 - △정보접근권 관련 연구·조사 △콘텐츠 개발 등: 130백만원 나. 중·장기 보조금 : 3개 분야 × 100백만원 = 300백만원

자료: 통일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⁴¹⁾

통일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의 설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재단의 주요 업무⁴²⁾인 ‘북한인권 관련 민간활동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인 바, 재단 설립 이전이라도 대통령 공약⁴³⁾ 및 국정과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활동 촉진·지원’⁴⁴⁾을 위한 정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수가 2023년에 48개, 신청 예산은 총 54억 규모였으나, 2024년의 경우 단체 수가 57개, 신청 예산도 총 73억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41)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면 되지만, 현행법에는 편의상 근거 규정을 별도로 법률에 두는 경우가 많음.

42)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생략)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대통령 공약사항」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관련 기능의 원활하고 조속한 수행

44) 「국정과제 94-5」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재정적 노력 강화 및 재단 설립 전, 실질적 정부역할 수행

금년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추가 지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탈북민 단체(통일부 등록단체 127개)의 북한인권 활동의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종래 북한인권 관련 단체 외 다른 분야의 비영리단체에서도 북한인권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⁴⁵⁾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3년에는 18개 단체에 20억원을 지원하여 평균 1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19개 단체에 18억원, 평균 9,47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단체 당 평균 1억원을 지원하였음.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2023-2024년 보조금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 도	연번	단체명	지원액
2023	1	(사) 북한인권시민연합	250
	2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235
	3	(사)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183
	4	(재) 북한인권과민주화실천운동연합	154
	5	(사) 평화한국	150
	6	(재) 국제학술원	150
	7	(사) 세이브엔케이	139
	8	(사) 과거청산통합연구원	120
	9	(사) 북한인권	103
	10	(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92
	11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88
	12	(사) 휴먼아시아	77
	13	피스브릿지	77
	14	(사) 통일아카데미	49
	15	(사)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	47
	16	통일맘연합회	30
	17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28
	18	북한인권개선과자유통일을위한모임	26
		2023년 계(평균액)	1,998(111)

45) 2024년 보조금 교부단체(19개) 중 8곳은 북한인권 증진을 주된 활동으로 하던 단체가 아니라는 설명임.

연 도	연번	단체명	지원액
2024	1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110
	2	(사) 탈북자동지회	172
	3	(사) 글로벌청소년센터	55
	4	(사) 유엔인권정책센터	147
	5	(사) 비욘드더바운더리	65
	6	(사) 우리들의 성장이야기	52
	7	뉴코리아여성연합	140
	8	(사)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172
	9	(사) 통일아카데미	62
	10	(사) 북한인권	105
	11	(사)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12
	12	(재)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172
	13	(사) 자유북한방송	68
	14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30
	15	(사) 더메신저	35
	16	(사) 북한개발연구소	150
	17	(사) 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	37
	18	(재) 원음방송	102
	19	(사) 북한인권시민연합	114
		2024년 계(평균액)	1,800(94.7)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3년과 2024년에 보조사업을 운영한 결과,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젊은 세대와 해외에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문화예술 및 콘텐츠 등 소프트 방식의 접근이 호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통일부 소관에서 북한인권 증진에 한정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개별적 지원 규모는 다른 중앙관서, 예컨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규모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봄.⁴⁶⁾

46) 2003년부터 추진중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을 최소 5% 이상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25예산안 사업설명자료 II-1, 286쪽), 현재 자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함. 2023년 16개 단체에 총 1억 7,400만원 지원, 2024년 13개 단체에 총 1억 6,100만원(단체당 평균 2,000만원 내외) 지원함.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⁷⁾에서는 민간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면서,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⁴⁸⁾

통일부는 사업공모 과정에서 자부담이 있는 단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재와 같이 시민단체의 자부담 없이 평균 1억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공모에 지원하는 단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통일부는 다른 부처의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단체당 보조금액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3년차가 시작되는 만큼 다른 부처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조금단체에 일정 정도의 자부담 비율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4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p. 102-105.

48)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관련 내용,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04.

- | |
|---|
| <p>☐ 사업의 수혜범위·효과성이 제한적이거나, 자체수입이 충분하여 자부담률 제고가 가능한지 면밀히 점검 후 예산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은 적정수요관리를 위해 자부담 신규 설정 및 자부담률 제고 등을 통해 민간의 책임성·자율성 강화 추진○ 민간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보조사업의 타당성·필요성·효과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검토 |
|---|

□ 보조사업 성격상 '실태조사' 등을 위한 사업 재검토 필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내역사업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29억 6,000만원이며, 그 중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9억 3,000만원, 보조사업 전문 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예산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산출내역
2,960	○ 일반용역비(210-14) : 30백만원 가. 국고보조사업 전문 평가 용역(3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930백만원 가. 단년도 사업 보조금 : 2,630백만원 - △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실상 알리기 △학술행사: 20개 단체 × 100백만원 = 2,000백만원 -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의 개발 등: 5개 단체 × 100백만원 = 500백만원 - △정보접근권 관련 연구·조사 △콘텐츠 개발 등: 130백만원 나. 중·장기 보조금 : 3개 분야 × 100백만원 = 300백만원

자료: 통일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민간)의 사무·사업을 국가가 장려하는 경우에 편성하며, 국가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용역비(민간위탁비)로 편성해야 함.

2025년 예산안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대안의 개발, 정보접근권 관련 학술 연구 및 조사 등은 통일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조금이 아닌 일반연구비(260-01) 또는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점검 등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⁴⁹⁾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면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이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 협의에 의해 긴급·현안으로 신규편성 되면서 북한인권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320-01)과 평가를 위한 일반용역비(210-14)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보면 보조금과 더불어 관리·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즉, 행정안전부 등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에 국고보조금 이외에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평가 등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통일부의 동 사업에는 국고보조금과 보조사업 평가용역비만 편성되어 있음.

4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행정안전부 등의 '2024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편성내역	예산액
국가인권위원회	국내교류협력-(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o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 보조금	161
		o 사업심사위원회 운영 및 점검 모니터링(수용비·여비·업추비 등)	9
		소 계	17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o 공익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250
		o 공익지원사업 관리·운영(수용비·여비·업추비 등)	81
		o 관리시스템(NTAS) 개선·유지관리·고도화 등	598
		소 계	3,929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o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1,500
		o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운영(평가보고서 등 자료 제작, 선정위원회 운영 등)	32
		o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 용역	120
		소 계	1,652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시작된 2023년 이후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 전용하거나 기본경비 활용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음.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내역사업 예산 조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사업명	목·세목		사업명	목·세목	
2023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2135-302)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260-01	45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2135-302)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260-01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평가용역비 부족분 총당
2024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20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210-1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평가용역비 부족분 총당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보조단체의 공모·선정에서부터 정산까지의 사업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적정 운영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C=B-A)	%
[230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74,959	83,897	80,782	△3,115	△3.7
	[233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4,139	52,838	52,609	△229	△0.4
		[3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930	15,987	16,945	958	6.0
		[30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7,061	36,273	35,086	△1,187	△3.3
		[500]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49	578	578	-	-
	[233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0,820	31,059	28,173	△2,886	△9.3
		[30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0,086	18,757	16,413	△2,344	△12.5
		[30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0,734	12,302	11,760	△542	△4.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강화, 자립·자활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 및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838억 9,700만원 대비 3.7%인 31억 1,500만원 감액된 807억 8,2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단위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사업 11억 8,700만원 감액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에서 9억 5,800만원 증액되었음.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사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3억 4,400만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5억 4,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나. 세부사업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930	15,987	16,945	958	6.0
- 북한이탈주민 정책기획·조정	374	160	162	2	1.3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	-	450	450	순증
-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4,460	4,827	5,062	235	4.9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324	3,337	3,387	50	1.5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144	135	156	21	15.6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128	7,528	7,728	200	2.7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500	-	-	-	-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제도 확립과 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159억 8,700만원 대비 6.1%인 9억 5,800만원 증액된 169억 4,500만원으로 편성됨.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이 4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에서 2억 3,5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서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시 특수성 고려 필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내역사업 중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내내역사업은 탈북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참가를 통해, 영어습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통일미래 한국을 준비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통일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신규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 상세내역 >

(단위: 천원)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170,000	○ 일반수용비(210-01) : 18,622 • 연수프로그램 관리 운영 * 참가자 선발 심사 사례비 : 300,000원×3명×10회=9,000천원 * 자료인쇄 : 600,000원×10회=6,000천원 * 참가자 발표회 : 2,000,000원×1식×2회=4,000천원 * 단수조정 : △378천원 ○ 임차료(210-07) : 4,000 • 연수프로그램 관리 운영 * 장소 임차료 : 2,000,000원×1식×2회=4,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1) : 12,000 • 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지원 * 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왕복항공료 : 2,400,000원×5명=12,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74,520 • 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지원 * 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생활비 : \$1,200×9개월×5명=74,520천원(1,380원/\$) ○ 해외경상이전(340-01) : 60,858 • 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지원 * 연수프로그램 참가비 : \$8,820×5명=60,858천원(1,380원/\$)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사업이 중단된 한미대학생 연수 (W
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WEST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미국에 파견하고, 어
학연수, 인턴쉽, 여행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으로 당시 사업 종료시점까지
총 48명을 선발하고 34명이 수료한 바 있음.

2025년도에 수행할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5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12개월의 연수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통일부가 선발인원을 추
천하면 교육부가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대상자 선발 및 연수를 진행할
예정임.

<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 선발인원·추천과정: 5명/글로벌연수 중기과정(12개월)
- 연수프로그램 관리: 22백만원(참가자 선발 심사, 사전 워크숍 등)
- 연수참가자 지원: 147백만원(왕복항공료 12백만원, 생활비 74백만원, 연수프로그램
참가 60백만원)

○ 월별 사업 추진계획 및 절차

- △통일부, 선발 인원 추천('25.2월) △교육부, WEST 프로그램 참가 신청·선발 및 연
수 진행
- 통일부 : △공고 및 모집('24.12월) △사전서류 심사('25.1월) △사전 워크숍('25.1월)
△참가대상자 선발(2~3배수) 및 추천('25.2월)
-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 △모집 및 공고('25.2~3월) →△선발(4~5월)→△사전 연수
(6월)→△연수계획발표 및 출국(7월)→△어학연수(7~9월)→△인턴쉽(10월~'26.5월)
→△여행('26.6월)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인 대학생들에게는 진로개척 및 취업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과 직업적 소양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시각을 함께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일 미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탈북청소년의 경우 탈북시점에 따라 일부 정규화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국내에 입국 후에도 별도의 외국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 진행되는 연수과정에서 해당 학생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표로서 민간 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발에 있어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탈북대학생 추천 및 선발 기준 >

구분	탈북학생(2020년)	일반학생(2024년)
어학성적	IELTS 4.5, TOEFL 59, TOEIC 520, T EPS 432, TOEIC Speaking 100, OPIc IL, G-TELP Speaking Level 6이상 시 험 성적 제출자 ※ OPIc IL, TOEIC Speaking 110점, G-TELP Speaking 6 이상 우대	1. TOEIC 750점 이상 또는 G-TELP L evel2 70점 이상 2. OPIc IM1 이상 또는 TOEIC Speaki ng IM1 이상 또는 G-TELP Speaki ng Level7 이상 * 1, 2 모두 충족
선발절차	서류심사(통일부)→1차 면접(국립국제교육원)→2차 면접(현지 중개 기관)	서류심사(국립국제교육원)→1차 면접(국립국제교육원)→2차 면접(현지 중개 기관)

자료: 통일부(2025년 탈북학생 선발기준은 미확정)

□ ‘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 내내역사업의 사업대상 반영 필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내역사업 중 ‘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 내내역 사업은 노후건물 지하층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 ‘한꿈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신규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산출 상세내역 >

(단위: 천원)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370,000	○ 민간자본보조(320-07) : 370,000 • 건축 설계용역 : 20,640×1식=20,640 • 건축 공사용역 : 337,360×1식=337,360 • 사무집기 및 비품 지원 : 12,000×1식=12,000

자료: 통일부

2023년 6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한꿈학교는 탈북청소년·청년, 제3국 출생 자녀를 4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들이 노후된 건물의 지하 1층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여 동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임.

< 한꿈학교 운영현황 >

- **설립일자** : 2004.4.19.(2009.10. 현 위치로 이전) *대안교육기관 '23.6 등록
-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한꿈(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 **교육시설** : 의정부시 회룡로 194, 장암주공1단지 상가 지하 1층/720.20㎡(223평)
- **기 숙 사** :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17길 31-3(미아동) / 23평형 6개 호실 17명
- **주요기능** : 탈북청소년·청년, 제3국 출생 자녀들 대상 교육
- **인원현황** : 학생 41명(남 12, 여 29)/ 교직원 10명 *북한출생(14명), 제3국 출생(26명)

자료: 통일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교육청의 인가를 받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⁵⁰⁾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고, 교육감이 관할하며 교사 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 대해서 교육청이 부담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조⁵¹⁾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고, 교육청의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의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지정⁵²⁾·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50)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5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 북한이탈주민 대상 대안교육 실시기관 >

구분	학교명 (위치)	인가/등록	학생수 (3국자녀수)	비용부담 주체 구분	지원예산 (억원)
특성화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안성)	인가	120 (93)	통일부* (보조금)	20.7
대안학교	여명학교 (서울강서)	인가	100 (78)		8.1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 성남)	인가	51 (60)		8.1
	드림학교 (충남 천안)	인가	75 (46)		5.7
	장대현중고등학교 (부산 강서)	인가	20 (4)		3.0
대안교육기관	남북사랑학교 (서울 구로)	등록	37 (17)	남북하나재단 (출연금)	1.40
	다음학교 (서울 서초)	등록	36 (11)		1.40
	반석학교 (서울 서초)	등록	28 (15)		1.40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	등록	16 (11)		1.30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	등록	41 (21)		1.50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 춘천)	등록	28 (19)		1.30

자료: 통일부(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

통일부는 동 내내역사업명을 '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동 내내역사업이 그 사업목적 및 범위·내용 등에 일치하게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통일부는 대안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대안교육기관은 한꿈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에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기존 인가받은 대안학교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관할청인 교육청

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전 단계의 교육기관의 경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탈북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꿈학교와 같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이후에 통일부에 의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통일부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라도 일정 인원 이상의 탈북청소년이 교육받고 있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이전 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 유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5. 남북관계 기반구축(3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3000] 남북관계 기반구축			6,491	6,449	6,628	179	2.8
	[3031]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		5,061	5,467	5,593	126	2.3
		[300]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2,962	3,417	3,521	104	3.0
		[302] 청사 등 시설관리	2,099	2,050	2,072	22	1.1
	[3032]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747	733	836	103	14.1
		[303]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458	453	563	110	24.3
		[506]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스템 운영(정보화)	289	280	273	△7	△2.5
	[3036]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683	249	199	△50	△20.1
		[31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683	249	199	△50	△20.1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 남북경제협력지구 관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개의 단위사업 아래 총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64억 4,900만원 대비 2.8%인 1억 7,900만원 증액된 66억 2,800만원임.

6.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C=B-A)	%
[4000] 남북회담			147	305	240	△65	△21.3
	[4031] 남북회담 추진		147	305	240	△65	△21.3
		[300] 남북회담 추진	147	305	240	△65	△21.3

자료: 통일부

「남북회담」 프로그램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및 인도 등 각 분야별 남북회담의 지속적 추진으로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제도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500만원 대비 △21.3%인 6,500만원 감액된 2억 4,000만원임. .

7.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C=B-A)	%
[5000] 통일교육			22,336	22,861	23,997	1,136	5.0
	[5031] 통일교육추진		14,595	14,308	14,127	△181	△1.3
		[3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898	2,521	2,490	△31	△1.2
		[308] 학교통일교육 강화	4,685	4,839	5,191	352	7.3
		[309]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4,530	3,717	3,644	△73	△2.0
		[310] 통일교육 자료개발	2,975	2,747	2,318	△429	△15.6
		[507]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508	484	484	-	-
	[5033]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433	1,465	1,512	47	3.2
		[308]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433	1,465	1,512	47	3.2
	[5002]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5,075	5,691	6,936	1,245	21.9
		[100]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5,075	5,691	6,936	1,245	21.9
	[5018]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1,233	1,397	1,422	25	1.8
		[200]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43	250	267	17	6.8
		[250]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990	1,147	1,155	8	0.7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 및 사회의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4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228억 6,100만원 대비 5.0%인 11억 3,600만원 증액된 239억 9,7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3,100백만원, 통일교육 자료개발에서 4억 2,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에서 3억 5,200만원 증액되었음.

2025년도 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는 69억 3,6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14억 2,200만원임.

나. 세부사업

(1) 통일교육 자료 개발(5031-310)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교육 자료개발	2,975	2,747	2,318	△429	△15.6
- 통일교육 자료개발·보급	2,922	2,007	1,577	△430	△21.4
-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	684	685	1	0.2
-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53	56	56	-	-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 자료 개발’(5031-310)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 확립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 표준교재, 통일 및 북한 관련 각종 교재 자료의 개발·보급, 수요자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사이버통일교육 콘텐츠의 개발·운영, 통일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원내 교육생, 통일교육 전문가·연구자 등 ‘통일교육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정보자료를 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27억 4,700만원 대비 15.6%인 4억 2,900만원 감액된 23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통일교육 자료개발·보급에서 4억 3,000만원 감액되었음.

□ 「저작권법」에 근거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반영 필요

내역사업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은 공무원·교원·일반 국민 등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음.

통일교육원은 2000년부터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왔는데, 사이버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스마트교육팀을 분리 신설함에 따라 2024년부터 내역사업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을 신설하였음.

통일교육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기관(34개)에 해당하는바, 「저작권법」 제25조⁵³⁾에 따르면,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저작물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가능하지만, 수업 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해 종량방식 또는 포괄방식 중 선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53)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4. 2. 27.>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생략)

⑤ 제3항 각 호의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8. 8., 2024. 2. 2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⑦ ~ ⑫ (생략)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2023.1. 문체부 고시)>

(내용) 학교 또는 국가·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해 ‘한국문화예술회협’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기준) 종량방식 또는 포괄방식 중 선택 가능하나, 대부분이 포괄방식 선택

△ 종량방식 : 어문(A4)·이미지 1건 7.7원, 음악 1곡 42원, 영상 5분 이내 176원씩 등

△ 포괄방식 : 수강생 1인의 시간당 기준금액(대면수업 12원, 원격수업 32원)

2022년까지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있었지만, 2023년 1월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각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게 됨.

저작권과 관련한 보상금을 징수·분배·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저작권협회는, 2023년 7월과 2024년 1월, 각 교육기관에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저작물 이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통일교육원은 이에 해당하는 이용내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저작권협회로부터 보상금 975만원⁵⁴⁾을 통보(2024. 9.) 받게 되었음.

통일교육원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미리 인지하고 2024년 이후의 예산안에 반영했어야 하지만, 저작권협회가 전년도 사용분의 ‘저작물사용 보상금 산정 내역’을 통보해 온 2024년 9월 이후에야 이를 인지하였음. 따라서 전년도에 이어 2025년 예산안도 해당 금액을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 경우 이·전용 등 변경집행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54) 보상금 산정액 : 9,750천원 [포괄방식 계산법: 교육과정별 교육생수×교육시간×단가(32원)의 합계]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이 초래될 수 있음.

향후 통일교육원의 사이버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상금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7000] 통일행정지원			61,327	66,562	63,752	△2,810	△4.2
	[7001] 인건비		44,590	48,454	44,763	△3,691	△7.6
		[100]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44,590	48,454	44,763	△3,691	△7.6
	[7011] 본부 기본경비		5,076	5,360	5,326	△34	△0.6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3,206	3,251	3,327	76	2.3
	[7031] 통일업무 R&D		292	271	438	167	61.6
		[300] 정책연구개발	292	271	438	167	61.6
	[7032] 통일업무지원		460	1,085	1,118	33	3.0
		[303] 통일업무지원	460	1,085	1,118	33	3.0
	[7033] 대북활동지원		1,386	1,882	2,407	525	27.9
		[304] 통일정책추진활동	1,386	1,882	2,407	525	27.9
	[7034] 통일정보화		1,914	1,837	1,955	118	6.4
		[501]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1,914	1,837	1,955	118	6.4
	[7035] 본부 전산운영		4,403	4,422	4,418	△4	△0.1
		[500] 본부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1,559	1,696	1,768	72	4.2
		[517]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정보화)	2,845	2,726	2,650	△76	△2.8

자료: 통일부

「통일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통일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여건

조성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그 밖에 정책연구개발, 통일업무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665억 6,200만원 대비 4.2%인 28억 1,000만원 감액된 637억 5,2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36억 9,100만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에서 7,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총 4,200만원, 정책연구개발에서 1억 6,700만원, 통일업무지원에서 3,300만원, 통일정책추진활동에서 5억 2,500만원, 통일업무정보화에서 1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나. 세부사업

(1) 통일업무지원(7032-303)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업무지원	461	1,085	1,118	33	3.0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08	278	280	△8	△0.7
- 통일부 기록관 운영	95	96	94	△2	△2.1
- 비상안전기반 구축	58	49	72	23	46.9
- 청년인턴 운영	-	662	672	10	1.5

자료: 통일부

‘통일업무지원’(7032-303) 사업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통일부 기록관 운영, 비상안전기반 구축, 청년인턴 운영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10억 8,500만원 대비 3.0%인 3,300만원이 증액된 1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원회 신설 지양하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통일부는 내역사업‘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운영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의2⁵⁵⁾,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조⁵⁶⁾,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⁵⁷⁾에 따라 “통일에 관련된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법정 위원회이며, 현재 6개의 분과위원회(통일정책, 인권인도, 정보분석, 통일협력, 남북관계관리, 통일교육)를 운영하고 있음.

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56)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명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57)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688호, 2024. 5.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정책의 수립·발전 및 북한의 제반실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정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비교 >

구 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설치근거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통일부훈령)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훈령)
위원회 성격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u>120명 이내</u>	위원장 1명 포함 <u>50명 이내</u>
위원 임기	1년, 연임 가능(2회)	1년, 연임 가능
분과위원회	6개 분과 (통일정책, 인권인도, 정보분석, 통일협력, 남북관계관리, 통일교육)	5개 분과 (정치군사, 경제, 인권인도, 국제협력, 사회문화)

자료: 통일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가 명확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2008년 4월부터 설치·운영되어 온 반면,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3년 3월 제정된 통일부훈령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⁵⁸⁾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며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통일부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통일부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외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등이 있음.

58)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3년 3. 1. 제정 및 시행, 통일부훈령 제650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미래 전략·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통일미래 전략·구상의 이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4. 통일미래 전략·구상의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미래 전략·구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통일부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현황 >

(단위: 백만원, 회)

위원회명	설치 근거	2023		2024		2025안
		예산 (집행)	회의 실적	예산 (집행)	회의 실적	
통일미래기획위원회 ¹⁾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500 (1,099)	34	1,050 (374)	26	1,050
한독통일자문위원회 ²⁾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231 (230)	3	217 (195)	5	217
북한인권증진위원회 ³⁾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0 (15)	5	10 (8.8)	3	10

주1) 통일정책추진(1031-300)-통일미래기획운영회 구성 및 운영

주2)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강화-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

주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자료: 통일부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⁵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 방지를 위해 기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복수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해야 함.

또한, 「정부조직법」 60)에 따르면, 행정위원회는 반드시 법률로(제5조),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함(제4조)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5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3. 5. 16.>

60)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⁶¹⁾ 행정기관의 장이 총리령·부령 이하의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하여도 「행정기관위원회법」을 준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⁶²⁾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다수의 주체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협의·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반드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님.⁶³⁾

다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역시 「행정기관위원회법」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인 바, 통일부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기설치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훈령 등을 통한 위원회 신설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61)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p. 135.

62)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p. 143.

63)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전면개정판), p. 297.

(2) 통일업무 정보화(7034-501)

< 2025년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통일업무 정보화	1,914	1,837	1,955	118	6.4
-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운영	1,187	1,099	1,091	△8	△0.7
-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75	73	203	130	178.1
-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 및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212	202	198	△4	△2.0
- 통일업무 정보화 기반 개선	261	285	285	-	-
- 개인정보보호 강화	179	178	178	-	-

자료: 통일부

‘통일업무 정보화’(7034-501)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 및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통일업무 정보화 기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18억 3,700만원 대비 6.4%인 1억 1,800만원 증액된 19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 사유는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ISP 수립 1억 3,100만원 신규 편성됨.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ISP구축 사업의 신속한 수행 필요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내역사업은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구축’을 위한 1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만원을 편성함.

<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 산출 상세내역 >

(단위: 백만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37	○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 73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 : 33백만원 나.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 36백만원 다. 기타운영지원 : 4백만원	1,955	○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 203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 : 31백만원 나.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 37백만원 다. 기타운영지원 : 4백만원 라. <u>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ISP 구축 : 131백만원</u>

자료: 통일부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구축’ 내내역사업은 기존 북한자료센터 정보시스템과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신규 정보시스템 간 연동·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설계를 위한 것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⁶⁴⁾에 따르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가 가능한

6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 지침 중 정보화사업

- 정보화사업은 AI·빅데이터기반·디지털·지능화전환 등 핵심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사업에 우선 배분
-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방안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전환을 검토하여 예산요구
- 정보시스템구축은 ISP 또는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 요구(BPR은 중앙관서장 자체 판단하여 수립 가능)하고, 시범·실증사업 후분사업(시스템 구축) 추진 시에도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ISP또는 ISMP 수립 및 검토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ISMP 수립 및 시스템구축 예산을 요구

바,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를 2027년에 정상적으로 개관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어야 하므로 2025년도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예산안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해당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2025년 5월 이전에는 정보전략계획(ISP)의 결과가 필요하므로,

통일부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신속하게 조달공고 및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정보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Ⅲ.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 수입

가. 세부사업

(1) 민간출연금(59-594)

< 민간출연금 계획 내역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계획		2025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민간출연금 (59-594)	-	150	150	150	150	-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의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었으며, 동 기금의 수입 항목 중 '민간출연금'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1억 5,000만원으로 작성되었음.

□ 민간기부금 관리를 위한 지출계획 필요

최근까지는 고령의 실향민 등이 북한지역에 학교나 병원을 설립하거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사용해달라며 기부를 하더라도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이 기부된 연도 내에 사용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기금 수입으로 귀속되었음.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⁶⁵⁾이 2024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민간 기부자가 기탁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별도 계정에 적립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통일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사유 등을 심의하는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는 기부금을 ‘민간출연금’ 항목에 포함하여 보고해왔으나 그 규모

65)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제19946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10. 시행)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 5. (생략)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131호, 2024. 6. 7. 일부개정, 2024. 7.10. 시행)

제2조(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③ (생략)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의 공무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7.]

가 미미한 바, 남북협력기금에 기탁된 민간기부금(출연금)은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총 89건, 약 28억 5,600만원이며, 2020년도에 1,100만원, 2021년도에 1억원, 2022년도에는 1,200만원임.⁶⁶⁾

통일부는 규모에 관계없이 기부금 ‘수입’에 상응하는 ‘지출’ 계정을 신설하여 해당 기부금 수입에 맞는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⁶⁷⁾

민간 기부금의 별도 적립 및 지출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에 추진된 ‘통일항아리’ 기금도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⁶⁸⁾ ‘통일항아리’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최근 언론을 통해 그동안 모은 기금을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금 계정에 적립하기로 했다고 보도⁶⁹⁾된 바 있음.

통일부는 기부자의 의도대로 기부금이 장기 적립·관리될 수 있게 된 바, 기금의 수입 항목 중 민간출연금(59-594)에 포함된 민간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적립하고, 기부자의 기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지출 항목을 신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66) 의안번호 제2123200호에 대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2쪽.

67) 남북협력기금에 민간기부금 적립제도가 시행된 직후인 7월 11일 탈북민 단체(탈북자동지회)는 회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통일부장관에게 전달하는 기탁식이 진행되기도 하였음.

68) ‘통일항아리’는 막대한 통일 비용(통일 후 초기 비용으로 추산된 약 55조원)을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한 달 월급 전액을 내놓으며 각계의 기부를 독려하여 모금 첫째(2012년)에 6억 3천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었음. 2013년 말에는 약 7억 6천만원으로 늘었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 9억원 정도가 적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69) " 'MB 월급 기부' 통일항아리, 남북협력기금에 통합 예정"(KBS뉴스, 2024. 8. 18.)

[참고자료]

< 남북협력기금 수입 중 민간기부금 현황 >

(단위:원)

연도	기부자	구분	금액
1992	○○○	단체	65,310
1993	○○○	개인	3,000,000
1994	○○○	단체	1,018,950
1995	○○○	단체	2,045,000
	○○○	개인	7,631,000
	○○○	단체	19,072,500
	○○○	금융기관	90,732,100
1996	○○○	개인	1,050,000
	○○○	금융기관	10,000,000
	○○○	금융기관	120,914,600
1997	○○○	개인	500,000
	○○○	단체	226,700
	○○○	기업	243,319,320
	○○○	금융기관	43,496,250
1999	○○○	금융기관	45,910
	○○○	단체	1,331,330
	○○○	금융기관	952,220
	○○○	단체	293,160
2000	○○○	개인	300,000
	○○○	단체	10,107,000
	○○○	개인	10,000,000
	○○○	외국	1,022,090
	○○○	개인	1,618,000
	○○○	금융기관	80,000,000
	○○○	외국	3,062,060
	○○○	언론	435,444,400
2001	○○○	언론	500,000,000
	○○○	언론	1,111,080
	○○○	언론	8,550,800
	○○○	개인	100,000,000
	○○○	언론	10,000,000
	○○○	단체	300,227,400
	○○○	단체	288,750
	○○○	단체	1,914,000
	○○○	외국	3,085,150
	○○○	외국	14,075,330
	○○○	금융기관	22,692,530
	○○○	금융기관	117,694,760
2002	○○○	외국	66,960,280
	○○○	개인	198,200
	○○○	개인	10,000,000
	○○○	외국	489,450
2003	○○○	단체	869,490
2004	○○○	개인	483,500
	○○○	개인	483,500

2005	○○○	단체	27,653,370
	○○○	단체	5,153,290
2006	○○○	개인	1,450,500
	○○○	개인	483,500
	○○○	단체	295,850
	○○○	단체	83,420
	○○○	단체	12,271,000
2007	○○○	개인	1,450,500
	○○○	단체	483,500
	○○○	단체	68,590
	○○○	단체	177,740
	○○○	개인	20,000,000
	○○○	금융기관	50,000,000
	○○○	개인	10,000
	○○○	개인	3,000,000
2008	○○○	개인	1,450,500
	○○○	금융기관	170,940
	○○○	단체	204,860
	○○○	개인	200,000
	○○○	단체	50,000,000
2009	○○○	개인	1,200,000
	○○○	개인	1,120,800
	○○○	개인	200,000
	○○○	단체	136,350
	○○○	단체	50,000,000
	○○○	개인	3,000,000
	○○○	개인	100,000
2010	○○○	단체	97,620
	○○○	개인	45,050
	○○○	개인	200,000
	○○○	단체	115,250
2011	○○○	단체	59,030
	○○○	단체	328,400
	○○○	단체	1,180,000
2012	○○○	개인	1,671,310
	○○○	단체	500,000
2013	○○○	단체	2,691,470
2015	○○○	단체	956,000
	○○○	단체	237,000,000
2016	○○○	개인	551,420
2017	○○○	개인	500,000
2018	○○○	개인	10,000,000
	○○○	단체	408,500
	○○○	단체	160,000
2020	○○○	단체	11,190,000
2021	○○○	단체	100,000,000
2022	○○○	단체	460,000
	○○○	개인	11,800,000
총 계	89건		2,856,585,570

주: 기부자 실명은 개인정보 등 사유로 익명 처리

자료: 통일부(의안번호 제2123200호에 대한 검토보고 참고자료에서 인용)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1000] 통일정책			3,357	4,592	5,043	451	9.8
	[1033] 통일기반조성		3,357	4,592	5,043	451	9.8
		[40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357	4,592	5,043	451	9.8

자료: 통일부

「통일정책」 프로그램의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세부사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은 경기도 연천군에 건립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안은 50억 4,300만원으로 2024년 45억 9,200만원 대비 9.8%인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요 >

-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 건립시기: 2014년 9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준공, 11월 개관
- 부 지: 273,074㎡, 연면적: 17,362㎡
- 수용인원: 일일 최대 480명
- 주요시설: 운영센터·연수관(지상 2층), 전시·체험시설, 체육관 및 식당, 생활관(4층), 가족빌리지, 직원숙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한반도 투어링장 등

나. 세부사업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1033-401)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357	4,592	5,043	451
-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924	1,164	1,180	16
- 센터시설 관리 운영	2,433	3,428	3,863	435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남북간 인적교류와 이산가족상봉 등 행사지원 및 국내외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를 위하여 2014년 11월 개관하여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1033-401) 사업은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시설관리 운영으로 구분됨.

체험연수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1일, 1박2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2025년 계획액은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된 11억 6,400만원임.

센터시설 관리 운영은 전시·체험시설인 통일미래체험관 등의 센터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 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4억 3,500만원 증액된 38억 6,300만원임.

□ 통일체험연수 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시설 확충 필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주요사업인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크게 신청연수(초·중·고 학생 대상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및 단체에서 신청하여 진행하는 연수)와 초청연수(일반국민·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군장병·사회적배려대상자·재외동포·외국인 등 대상을 센터에서 초청하여 진행하는 연수), 찾아가는 연수(학교, 각종 행사장 등에서 연수 진행), 비대면 연수(도서벽지 학교 등 대상 온라인 연수)를 운영하며, 2025년 계획액은 전년대비 1,600만원 증액된 11억 8,000만원임.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상세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4 예산	'25 예산안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592	5,043
①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1,164 - △기획총괄 및 홍보 96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5 △프로그램 운영 1,013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1,180(+16) - △기획총괄 및 홍보 98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5 △프로그램 운영 1,027
② 센터 시설관리 운영	센터 시설관리 운영 3,428 - △통일체험관 운영 209 △시설운영 지원 3,219 - (종료사업) '시설운영 지원' 內 인조잔디 교체(650백만원), 홈페이지 기능개편(144백만원), 10주년 행사비(40백만원)	센터 시설관리 운영 3,863(+435) - △통일체험관 운영 1,261 △시설운영지원 2,602 -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대국민 주말개방사업(40), 옥상방수공사 등 노후화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144), <u>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편 사업(1,052)</u>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체험연수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민족공동체 회복의 장 모색을 목표로, 12개의 통일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대상별, 일정별로 운영하고 있음.

< 2025년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계획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통일미래 체험	KTX 통일호를 타고, 통일 7년 후 통일한국의 문화·관광·물류·자원 등 다양한 영역을 가상기기를 통하여 체험
통일로 가는 길	분단 현실, 북한 실상, 남북관계 등을 이해하고, 통일퍼즐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통일 ON	퍼즐게임 방식을 활용하여 분단의 역사적 배경, 북한실상, 남북관계 등 통일 필요성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을 학습
나는 캐릭터 디자이너	통일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물(캐릭터)을 미니블록을 활용하여 직접 제작
유니빌리지	통일시대의 건축물과 마을을 카프라 블록을 활용하여 제작, 이를 통해 통일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내찍 내편 솜뿔투어	모듬 구성원과 미래의 통일한국 관광상품과 관련된 솜뿔을 촬영하며 긍정적인 통일 한국의 미래를 상상
통일탐정 사무소	추리활동을 통해 통일, 북한 관련 지식을 익히고 통일한반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도전! 통일골든벨	분단, 북한의 분야별 실상, 남북관계, 통일편익 등을 주제로 한 퀴즈를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
톡톡톡 통일세대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리멤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실상을 이해하고, 이를 게임형식으로 체험
몽쳐야 뜬다 -통일탐사단	남북한 도시의 지리적 특징과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주제로 통일을 대비한 여행계획을 수립
그곳을 가다 (분단·안보 현장견학)	오두산통일전망대, 태평전망대 등 분단·안보현장 방문을 통해 분단현실을 이해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5년도에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최신 기술 활용을 통한 통일체험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및 장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편사업에 10억 5,200만원 신규로 편성함.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체험시설로서 통일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체험관은 경원선의 가상 역(驛)인 ‘통일누리’ 역에서 KTX-통일호를 타고 출발하여, 시간 여행을 통해 분단의 과거를 거쳐 통일 후 7년 미래의 통일광장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통일한국의 변화를 VR 등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미래체험관(체험시설) >



자료: 통일부

통일미래체험관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인기시설로 관람객 및 교육·연수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⁷⁰⁾ 통일미래체험관의 체험 콘텐츠의 경우 신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별도 예산이 없이 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콘텐츠를 개선하는 정도로 운영해온 상황으로, KTX 통일호 VR 체험기기의 경우 6년이 경과되었으며, 주요 체험기기들도 설치한지 10년이 경과된 경우가 많아 한반도“미래”센터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최근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주요 변화를 반영하는 콘텐츠의 신규 개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최신 기술 활용, 다양한 연령대를 배려한 체험공간 마련 등을 위해 노후화된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편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⁷¹⁾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25년도 통일미래체험관 콘텐츠 개편을 진행함에 있어 최근 리모델링 및 콘텐츠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전시 및 체험시설들을 살펴보고, 최신 기술 활용을 통해 체험객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과학관,⁷²⁾ 항공우주과학관 등과 업무협의를 통해 전시물, 체험시설 등의 대여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0) 1회 이용에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동시 이용인원은 80여 명임.

71)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시 '14년 개관 이후 노후화가 진행된 체험시설·시스템·장비 등의 최신화를 통해 효과적인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할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 대통령께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체험토록 하는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강조한 바 있음.

72) 국립과천과학관의 경우 과기부 소속기관으로 5년을 주기로 콘텐츠를 교체하고 전시시설 사업비는 4~5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

3. 남북사회문화교류(2000 프로그램)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2000] 남북사회문화교류			3,456	15,951	10,368	△5,583	△35.0
	[2040] 남북사회문화교류		3,456	15,951	10,368	△5,583	△35.0
		[401] 사회문화교류지원	3,456	15,951	10,368	△5,583	△35.0

자료: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지원’(2040-401)은 남북한 주민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남북 주민간 다방면의 접촉을 유도하고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도모하며,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⁷³⁾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 및 지자체경상보조로 지원함.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사회문화교류 지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2025년 계획안은 103억 6,800만원으로 2024년 159억 5,100만원 대비 35.0% 감액되었음.

즉, 현재의 남북 관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 지원에서

73)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8. (생략)

55억 8,300만원이 감액됨.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육·학술 협력사업 지원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교육·학술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은 26억 400만원으로 2024년과 동일하게 편성됨.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 지원 2025년 계획안은 77억 6,400만원으로 2024년 133억 4,700만원 대비 55억 8,300만원 감액됨.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 중 인적왕래 지원은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 및 남북한 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은 15억 9,100만원으로 2024년 23억 9,200만원 대비 8억 100만원 감액됨.

기타 협력사업은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 문화예술, 체육, 종교, 사회, 지자체 등 기타 분야에서 남북주민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회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액은 2024년 대비 47억 8,200만원 감액한 61억 7,300만원임.

< 계획안 상세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액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감	
				(B-A)	(B-A)/A
○ 사회문화교류지원	3,456	15,951	10,368	△5,583	△35.0
- 교육학술협력 사업지원	2,358	2,604	2,604	-	-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2,358	2,604	2,604	-	-
-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 지원	1,098	13,347	7,764	△5,583	△41.8
· 남북간 인적왕래 지원	-	2,392	1,591	△801	△33.5
· 기타 협력사업	1,098	10,955	6,173	△4,782	△43.7

자료: 통일부

4. 인도적 문제 해결(21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2100]		인도적 문제 해결	1,745	589,498	601,523	12,025	2.0
	[2140]	이산가족 교류지원	993	17,877	13,408	△4,469	△25.0
		[403] 이산가족 교류지원	993	17,877	13,408	△4,469	△25.0
	[2141]	대북 인도적 지원	752	571,621	588,115	16,494	2.9
		[401] 구호지원	-	96,307	112,230	15,923	16.5
		[402] 민생협력지원	752	475,314	475,885	571	0.1

자료: 통일부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이산가족 교류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2개의 단위사업과 이산가족 교류지원, 구호지원, 민생협력지원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이산가족 교류지원은 당국·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교류 경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 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지역 자연재해 및 전염병, 식량난 등 위기 상황 발생시 인도적 지원,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과 농축산 협력 및 산림복구, 환경·보건의료 분야 협력,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계획안은 6,015억 2,300만원으로,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44억 6,900만원 감액되었고, 구호지원 사업과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각각 159억 2,300만원, 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부사업

(1) 구호지원(2141-401)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액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감	
				(B-A)	(B-A)/A
○ 구호지원	-	96,307	112,230	15,923	16.5
- 구호지원	-	96,307	112,230	15,923	16.5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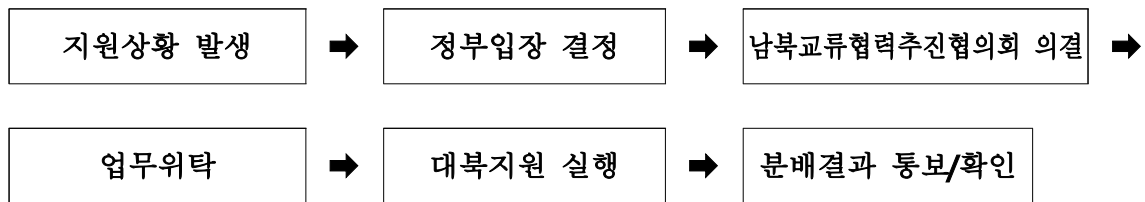
‘구호지원’(2141-401)은 북한지역에 자연재해,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 경감 및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쌀 7.5만톤, 긴급구호물품 12만 4,000박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기금계획안에 전년 대비 159억 2,300만원(16.5%)이 증액된 1,122억 3,000만원으로 작성됨.

□ 구호지원 사업, 집행 가능성 고려한 증액 필요

‘구호지원’은 북한지역에 자연재해,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경감 및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1,122억 3,000만원임.

< 사업 집행 절차 >



자료: 통일부

세부내역에서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316억 6,3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이지만, 쌀 지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8.7만톤에서 1.2만톤이 감소된 7.5만톤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전년도 646억 4,400만원 대비 159억 2,300만원이 증액된 805억 6,700만원이 편성됨.

그 주된 이유는 국제 쌀 가격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태국산 쌀 가격이 크게 올랐고, 수송운임 및 부대경비 등이 톤당 \$137에서 \$144으로, 적용 환율도 1,301원/\$에서 1,347원/\$으로 각각 상승하였기 때문임.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통일부에 따르면, 실집행은 대한적십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그 지원이 이루어지나, 당국간의 합의를 통해서 구호 상황에 맞는 필요품목이나 수량 등을 협의하여 적정 품목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임.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

(단위: 백만원)

'24년 계획		'25년 계획안	
계획	산출내역	계획	산출내역
96,307	- o 쌀(8.7만톤) 64,644 - 원곡대 : 48,897 · 8.7만톤×\$432/톤×1,301원(1\$) * '22년 태국산 쌀 평균가격 적용(FOB 기준) - 수송운임 및 부대경비 등: 15,507 · 8.7만톤×\$137/톤×1,301원(1\$) - 예비비(원곡대 5% 내외) : 240 - o 긴급구호물품 31,663(전년 동) - 긴급구호키트 : 31,000 · 124,000박스×250,000원 - 수송운임 및 부대경비 : 620 · 310대(10톤/대)×2,000천원 - 예비비(물품비 5% 내외) : 43	112,230	- o 쌀(7.5만톤) 80,567(증15,923) - 원곡대 : 65,666(증16,769) · 7.5만톤×\$650/톤×1,347원(1\$) * '23년 태국산 쌀 평균가격 적용(FOB 기준) - 수송운임 및 부대경비 등: 14,548(감959) · 7.5만톤×\$144/톤×1,347원(1\$) - 예비비(원곡대 5% 내외) : 353 - o 긴급구호물품 31,663(전년 동) - 긴급구호키트 : 31,000 · 124,000박스×250,000원 - 수송운임 및 부대경비 : 620 · 310대(10톤/대)×2,000천원 - 예비비(물품비 5% 내외) : 43

자료: 통일부

< 긴급구호 및 취사구호 구성(예시):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품 기준 >

품 목	내용물	수량
담 요	폴라폴리스	2
구호의류	하복 또는 동복	1
취사용품	코펠세트	1
가스렌지	부탄가스 4캔 포함	1
생활용품	세면도구, 내의	1
백 미	10kg	1
재난부식	참치캔, 햄캔, 장조림캔	1
포장대	보관·이동용 가방	1

자료: 통일부

긴급구호 지원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24억원이 집행되었으나 2011년 이후 계획된 기금 전액이 불용되고 있음.

북한은 현재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하고 헌법까지 개정하였으며,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유엔기구의 입국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등 외부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통일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과는 구분하여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북한 내 각종 재난 등 위기 발생 시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예산액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는 설명임.

한편, 기금은 20%의 범위에서는 자체적인 계획 변경이 가능한 바,⁷⁴⁾ 통일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지 및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통일부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금 재원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바,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증액은 인도적 고려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역대 정부의 수해지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74)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 역대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현황 >

(단위:억 원)

연도별	내역	금액
2005	수해지원(응급구호물품)	2
2006	수해지원(쌀, 구호물품, 자재장비 등)	800
2007	수해지원(구호물품, 자재장비)	423
2010	수해지원(쌀, 컵라면, 시멘트)	72

자료: 통일부

(2) 민생협력지원(2141-402)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액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감	
				(B-A)	(B-A)/A
○ 민생협력지원	752	475,314	475,885	571	0.1
- 북한영유아 등 지원	-	87,134	147,134	60,000	68.9
- 보건의료협력	-	99,416	159,416	60,000	60.4
-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	287,701	168,258	△119,443	△41.5
- 인도지원 협력 체계 구축 지원	752	1,063	1,077	14	1.3

자료: 통일부

‘민생협력지원’(2141-402)은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및 산림복구, 환경·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 민생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계획액은 2024년 4,753억 1,400만원 대비 0.1%인 5억 7,100만원 증액된 4,758억 8,500만원으로 작성되었음.

북한영유아 등 지원 1,471억 3,400만원, 보건의료협력 사업비 1,594억 1,600만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사업비 1,682억 5,8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임.

□ 민생협력지원, 집행 가능성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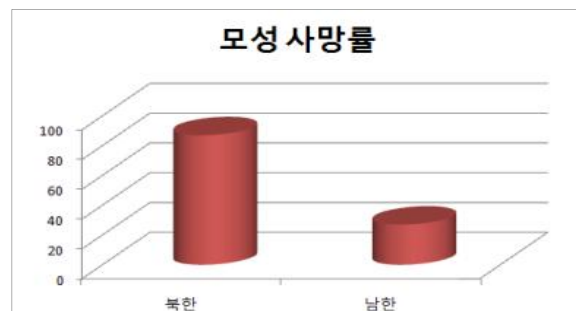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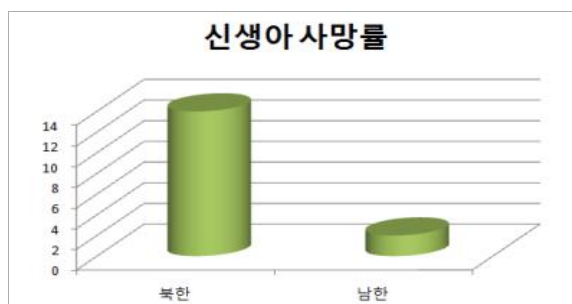
내역사업 중 ‘북한 영유아 등 지원’은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5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 장기화된 식량난으로 주민에 대한 배급 및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영양 및 보건의료 지원이 필수적인 임산·수유부 및 영유아들이 영양결핍 및 질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⁷⁵⁾

5세 미만 아동의 2.5%가 급성 영양장애, 16.8%가 만성 영양장애로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바,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북한의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과 보건의료서비스를 국제기구(UN⁷⁶⁾, WFP⁷⁷⁾, UNICEF,⁷⁸⁾ WHO⁷⁹⁾ 등)와 함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모자보건 지원’에 600억원을 증액한 741억

75) 2023년도 세계보건통계 중 남북한 신생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비교



76) UN은 1,000days 계획으로 6년간 3단계로 지원할 계획이며, 1단계 연간 1억불 요구

77) WFP : 아동시설, 의료시설 대상 슈퍼비스켓, 슈퍼씨리얼 공급, 통일부와 2014년 9월 안정적인 공여 및 파트너십을 위한 MOU 체결

78) UNICEF :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필수백신, 만성영양장애 아동 치료, 아동시설 식수 및 위생 사업 진행, 통일부와 2015년 5월 안정적인 공여 및 파트너십을 위한 MOU 체결

79) WHO : 북한 1차 보건의료체계 구축, 리 단위 의료시설 개보수, 북한 의료인력 교육 훈련 진행, 통일부와 2006년부터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통일부 공여로만 사업 진행)

3,400만원, 민간단체를 통한 통일미래세대인 북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기타 취약계층 지원에 730억원을 각각 계획하고 있음.

영유아의 영양결핍 및 질병은 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바, 장기적으로 향후 통일된 미래의 인적 자원의 건강·성장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우리 정부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는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방침임.

< 2024년도 계획 및 2025년도 계획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

(단위: 백만원)

'24년 계획			'25년 계획안		
계획	산출내역		계획	산출내역	
475,314	■북한 영유아 지원	87,134 ○ 「모자패키지」지원 64,134 * UNF구 47,100, 기타 국제기구 등 17,034 ○ 북한 취약계층 지원 23,000 * 민간단체 16,000, 국제기구 7,000,	475,885	■북한 영유아 지원	147,134(증 60,000) ○ 「모자패키지」지원 74,134 * UNF구 47,100, 기타 국제기구 등 27,034 ○ 북한 취약계층 지원 73,000 * 민간단체 10,000, 국제기구 63,000
	■보건의료 협력	99,416 ○ 보건의료 체계 지원 21,172 * 민간단체 4,951, 국제기구 16,221 ○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65,485 * 민간단체 17,900, 국제기구 47,385, 일반연구비 200 ○ 의료인력 교육 지원 8,500 * 민간단체 4,500, 국제기구 4,000,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4,259		■보건의료 협력	159,416(증 60,000) ○ 보건의료 체계 지원 21,172 * 민간단체 4,951, 국제기구 16,221 ○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125,485 * 민간단체 6,100, 국제기구 119,185, 일반연구비 200 ○ 의료인력 교육 지원 8,500 * 민간단체 4,500, 국제기구 4,000,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4,259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287,701 ○ 농축산 협력 : 41,250 ○ 산림협력 : 67,800 ○ 환경협력 : 23,450 ○ 비료지원(12.7만톤) : 155,201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168,258(△119,443) ○ 농축산 협력 : 24,148 ○ 산림협력 : 35,103 ○ 환경협력 : 13,847 ○ 비료지원(9.8만톤) : 95,160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1,063 ○ 남북 및 국제사회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300(민간단체) ○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763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1,077(증 14) ○ 남북 및 국제사회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300(민간단체) ○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777

자료: 통일부

또한, 민생협력지원의 내역사업 중 ‘보건의료 협력’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를 개선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08년 「남북보건의료·환경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및 2018년 보건의료 분과회의 등 과거에 ‘합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단계 협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보건의료 체계 지원에 211억 7,200만원, 북한 감염병 등 질병통제 체계구축 지원에 1,254억 8,500만원, 의료인력 교육 지원에 85억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에 42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기금 관리·운용 주체인 통일부에 따르면,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부터 병원 시설·의료인력 개선 등 보건의료협력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간 감염병 협력 수요가 증가하였는 바,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시적 위협이 될 것이므로, 한반도 남북 주민 모두의 생존을 위한 공동대응·협력이 필요함.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수준(의약품 부족 및 전기·식수 등 부족)으로 주민들이 전염병 감염에 노출되어 있고 기초적인 의료 진료도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북한 내 결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선 ‘질병통제체계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진단 및 치료의 공백으로 그간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이 무력화되어 2-3년 내에 ‘다제 내성 결핵’⁸⁰⁾이 확산될 우려가 큰 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결핵보

고서>(2023. 11.)에서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하기 도 하였음.⁸¹⁾

통일부는 내성이 발생하는 등 결핵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한 치료약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단·치료·사후 모니터링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초기단계 협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음.

‘보건의료 체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기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규모 등은 향후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남북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보건의료 협력’ 산출 내역 >

(단위: 백만원)

계획안 159,416	산출 근거
□ 보건의료 체계 지원 21,172 - 민간단체 4,951 - 국제기구 및 국제NGO 16,221	- 실태조사 1,000(1건*1,000) - 병원인프라 및 의약품 등 지원 20,172
□ 질병통제체계 구축 지원 125,485 - 민간단체 6,100 - 국제기구 및 국제NGO 119,185 - 관련 연구용역 200	- 결핵 지원 74,431 - 말라리아 지원 44,754 - 역학 지원 6,300
□ 의료인력 교육지원 8,500백만원 - 민간단체 4,500 - 국제기구 및 국제NGO 4,000	- 북한의료인력 교육 지원 8,500 (425명*20)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 사업비 지원 4,250

자료: 통일부

‘구호지원’과 마찬가지로 ‘민생협력지원’ 역시 매년 낮은 집행률을 보

80) 다제내성 결핵(多劑耐性結核, multiple drug resistance tuberculosis)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요 결핵 치료제에 대해 내성이 생긴 결핵을 의미함.

81)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2023 World Health Statistics, WHO) >

	북한	남한	전세계	캄보디아	콩고	말레이시아	가나
결핵발생률	513	44	134	288	318	97	83

이고 있으나, ‘구호지원’이 2011년 이후 계획된 기금 전액이 불용되고 있는 반면, ‘민생협력지원’은 2021년 영유아, 보건의료 협력 등에서 약 17억원, 2022년에는 33억 7천만원,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7억 5천만원, 7억 6천만원이 집행되었음.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는 구분하여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북한은 현재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유엔기구의 입국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등 외부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여전히 조성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계획액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는 설명임.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함은 물론, 그에 따른 적정 소요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5. 남북관계 기반구축(3000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 / A
[3000] 남북관계 기반구축			13,876	262,194	206,463	△55,731	△21.3
	[3040]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6,736	248,421	201,499	△46,922	△18.9
		[400] 경제교류협력보험	-	3,847	2,501	△1,346	△35.0
		[401] 경험기반(무상)	3,908	127,152	102,649	△24,503	△19.3
		[402] 경험기반(융자)	-	99,014	84,359	△14,655	△14.8
		[403] 경제교류협력대출	-	9,000	5,850	△3,150	△35.0
		[405] DMZ 평화적 이용	2,828	9,408	6,140	△3,268	△34.7
	[3041] 개성공단 조성		7,140	13,773	4,964	△8,809	△64.0
		[403]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2,027	6,626	2,819	△3,807	△57.5
		[405] 개성공단 기반조성	5,113	7,147	2,145	△5,002	△70.0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프로그램의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557억 3,100만원(21.3%) 감액된 2,064억 6,300만원이 편성됨.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이 전년도 편성액(38억 4,700만원) 대비 35.0%인 13억 4,600만원이 감액된 25억 100만원으로 작성되었고, 경협기반(무상) 사업이 전년도 계획액(1,271억 5,200만원) 대비 19.3%인 245억 300만원 감액된 1,026억 4,900만원, 경협기반(융자) 사업이 전년도 계획액(990억 1,400만원) 대비 14.8%인 146억 5,500만원 감액된 843억 5,900만원, 경제교류협력대출은 전년도 계획액(90억원) 대비 35.0%인 31억 5,000만원이 감액된 58억 5,000만원으로 작성되었음.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전년도 계획액(94억 800만원) 대비 34.7%인 32억 6,800만원이 감액된 61억 4,000만원으로 작성되었음.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의 경우 전년도 계획액(66억 2,600만원) 대비 57.5%인 38억 700만원이 감액된 28억 1,900만원으로 작성되었고,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전년도 작성액(71억 4,700만원) 대비 70.0%인 50억 200만원이 감액된 21억 4,500만원으로 작성되었음.

6. 남북협력기금 운영비(7100 프로그램)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7100]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2,256	2,239	2,688	449	20.1
	[7176]	기금관리비	2,256	2,239	2,688	449	20.1
		[201] 기금관리비	42	65	65	-	-
		[202] 위탁수수료	2,182	2,101	2,550	449	21.4
		[203] 사업관리비	31	73	73	-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및 사업관리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수출입 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프로그램의 2025년도 계획액은 전년도 대비 4억 4,900만원(20.1%) 증액된 26억 8,800만원으로 작성됨.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금관리비와 사업관리비는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6,500만원, 7,300만원으로 작성되었고, 위탁수수료의 경우 국가결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전산화 소요경비 등으로 전년도 계획액(21억 100만원) 대비 21.4%인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원으로 작성되었음.

7. 기금간거래(9100 프로그램)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 /A
[9100] 기금간거래			474,873	596,209	548,737	△47,472	△8.0
	[9110] 기금간거래		474,873	596,209	548,737	△47,472	△8.0
		[910]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430,000	520,000	455,400	△64,600	△12.4
		[920]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44,873	76,209	93,337	17,128	22.5

자료: 통일부

「기금간거래」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⁸²⁾ (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프로그램의 2025년도 계획액은 전년도 대비 474억 7,200만원(8.0%) 감액된 5,487억 3,700만원으로 작성됨.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사업이 전년도 계획액(5,200억원) 대비 12.4%인 646억원이 감액된 4,554억원으로 작성되었고,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사업의 경우 전년도 계획액(762억 900만원) 대비 22.5%인 171억 2,800만원이 증액된 933억 3,700만원으로 작성되었음. 주요 증액

82)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신설된 기금.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공공자금에 국공채 금리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다른 금융자산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음.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 매입과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에도 충당함(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이유는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예수원금 중 2025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이 4,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646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임.

2025년 계획안에는 예수원금 중 2025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 4,554억원과 예수이자 933억 3,700만원이 반영되었음.

예수원금 4,554억원은 공자기금을 차입하여 상환할 예정이고, 예수이자 933억 3,7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정부출연금)으로 상환할 예정임.

8. 여유자금 운용(9700 프로그램)

< 2025년도 계획안 >

(단위: 백만원, %)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결산액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 /A
[9700] 여유자금운용			163,361	113,431	94,334	△19,097	△16.8
	[9710] 여유자금운용		163,361	113,431	94,334	△19,097	△16.8
		[970] 통화금융기관 예치	140	4,855	4,855	-	-
		[92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63,221	108,576	89,479	△19,097	△17.6

자료: 통일부

2025년 여유자금 운용 계획안은 2024년 1,134억 3,100만원 대비 16.8%인 190억 9,700만원이 감액된 943억 3,400만원으로 작성되었음.

내역별로 보면 통화금융기관예치⁸³⁾가 전년과 동일하게 48억 5,500만원으로 작성되었고, 비통화금융기관예치⁸⁴⁾는 전년도 1,085억 7,600만원 대비 190억 9,700만원 감액된 894억 7,900만원으로 작성됨.

83) 통화금융기관은 화폐발행 등을 통해 통화의 원천적 공급 및 조절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높아 예금통화의 창출기능을 가지는 예금은행으로 구분되고, 예금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그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구분되며, 특수은행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그 성격상 통화창출능력이 미미하다고 인정되어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됨.

84) 비통화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통화창출 기능보다는 자금의 이전적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중개기관으로,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통화금융기관 이외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임.

문 의 처

02)6788-5267, 5269
